

해외인수합병 거래에 따른  
세금부과에 관한 연구

2018년 7월

국 세 청  
박 미 정

##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 국
2. 훈련기관명 : 텍사스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3. 훈련분야 : 세법
4. 훈련기간 : 2017.8.7.~2018.8.6

# 목 차

## 제1장 서론

- I. 연구의 배경
- II. 연구의 내용
  - 1. 목적
  - 2. 필요성
  - 3. 내용
- III. 연구의 범위

## 제2장 기업 인수합병 개요

- I. 개요
  - 1. 기업 인수합병 정의
  - 2. 기업 인수합병 동기
  - 3. 기업 인수합병 유형
  - 4. 기업 인수합병 대표적 사례
- II. 최근 기업 인수합병관련 국제 이슈
  - 1. 유럽연합(EU)의 동향
  - 2. BEPS 프로젝트의 시작

## 제3장 국내 기업 인수합병과 세제

- I. 개요
  - 1. 우리나라 인수합병 시장 현황
  - 2. 기업결합 주체별 동향(2015년 기준)
  - 3. 우리나라 인수합병 시장 전망
  - 4. 우리나라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방법(원샷법)
- II. 국내 구조조정(restructuring) 세제

1. 합병 관련 구조조정(restructuring) 세제
2. 인적분할 관련 구조조정(restructuring) 세제
3. 물적분할 관련 구조조정(restructuring) 세제
4. 현물출자 관련 구조조정(restructuring) 세제
5.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관련 구조조정(restructuring) 세제
6. 자산의 포괄적 양도 관련 구조조정(restructuring) 세제

## 제4장 미국 기업 인수합병과 세제

### I. 개요

1. 미국 인수합병 시장의 특징 및 현황
2. 미국 인수합병 투자관련 법조항

### II. 미국 구조조정(restructuring) 세제

## 제5장 기업 인수합병 사례 연구 및 과세 방법

### I. 글로벌(Global)기업 사업구조 재편과 세금문제

1. 공격적 조세회피란?
2. 공격적 조세회피방지 방법
3. 인수합병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 II. 최근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과세 사례연구

1. 구글세 공론화
2. 인수합병 관련 장부상 영업권 과세 문제

## 제6장 결론

### I. 기대효과

1. 해외 인수합병과 조세전략 수립시 한국기업의 세무상 혜택 연구
2. 글로벌(Global)기업이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 II. 인수합병 활성화관련 정책제언

1. 인수합병시 과세특례대상 범위에 대한 확대 필요
2. 과세특례요건과 관련한 규정의 정비 방법 마련
3. 현행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

### Ⅲ. 인수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와 관련한 정책제언

## 제1장 서론

### I. 연구의 배경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빌미로 상표권, 상품 로고, 특허권 등 각종 지적재산권을 본점 또는 본사로 이전하면서, 현지의 다른 기업과 사용계약을 맺고 종전처럼 이용토록 하면서 로열티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하면서 본사에 소득을 이전을 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최근 EU(유럽연합)에서는 구글세(Google Tax, 수익우회세)<sup>1)</sup> 도입으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글로벌(Global)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BEPS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국제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 글로벌(Global) 기업의 해외 지배구조 및 인수합병 보고를 의무화했다.<sup>2)</sup> 국외에 일정 규모이상 내부 거래가 있는 법인을 둔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에 법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외 법인 및 자회사, 지점, 사무소의 지배구조와 거래내역, 인수합병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017년부터 해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영국의 일간지 The Guardian에 따르면<sup>3)</sup> 2013년 구글의 영국 내 매출액은 56억 달러(약 6조 7700억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050파운드(약 353억원)에 불과했다. EU(유럽연합)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

---

1)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사용료 부과를 위한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와 소득을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비용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회피하는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한 구글세로 구분됨.

2)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2016.12.20. 신설

3) Google's tax deal with the UK: key questions answered (2016.08.22.)

금을 회피하기 위해 유럽 내에 Subsidiary(자회사) 설립 및 인수합병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글로벌(Global) 기업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해외 지주회사 후보지는 아래와 같다.

표1) 글로벌(Global) 기업의 해외 지주회사 후보지

		유럽	대서양 연안	아시아	기타
a	완전세금면제국가		Bahamas, Bermuda, Cayman Islands		
b	저세율국	Monaco, Gibraltar, Guernsey, Isle of Man, Jersey, Liechtenstein	Netherlands Antilles, Antigua, Barbados, Anguilla, British Virgin Islands	Macao, Singapore	
c	국외소득면제국		Costa Rica, Panama	Hong Kong, Malaysia	
d	조세혜택부여국	Ireland, Luxembourg, Netherlands, UK, Belgium, Malta		Philippines	Mauritius

## II. 연구의 내용

### 1. 목적

향후에도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은 내수시장 침체, 금융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따라 Foreign Investment(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이 지원하려는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의 대학원 회계학 MS과정은 Ernst&Young 회계법인이 주관하는 Tax Track이 특화된 과정으로 Accounting과 결합된 1년 과정으로, 본 과정은 해외인수합병 거래에 따른 세금부과에 관한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음. 예를 들면, Corporate Taxation, Tax research, Taxation of Mergers & Acquisitions, International Taxation 등이 있음. 해당 과

목을 이수하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시 세금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폭넓게 연구할 수 있다.

또한 동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 방식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

## 2. 필요성

해외투자 거래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의 처리 방식에 따라 회계적 비용과 세무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세금의 이연 및 탈세 가능하다. 법인의 형태, 이중과세 방지협약 맺은 여부, 각국의 세제 차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법인에 대한 과세가 누락될 수 있다.

표2) 해외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상 이점

인수 구조별 세무효과 분석(EU경우)		
구분	직접인수	지주회사 설립
배당원천징수	Italy->Korea: 10%	Italy->Luxembourg :0% Luxembourg->Korea :0%
이자원천징수	Italy->Korea: 10%	Italy->Luxembourg :0% Luxembourg->Korea :0%
직접외국납부세액	Italy->Korea에 지급하는 배당원천세	Luxembourg->Korea에 지급하는 배당원천세
간접외국납부세액	Italy 납부 법인세	Luxembourg 법인세 + Italy 납부 법인세의 50%



해외 인수합병과 조세전략 수립시 한국기업들은 해외투자시 세무상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지주회사 설립을 할 수 있다. 한국 모기업은 외국에서 원천징수 납부액 최소화 및 재투자에 의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해외지주회사(EU소재)는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어 원천징수에 의한 tax leakage는 없다.

### 3. 내용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 해외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해외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 신고 및 세무 조사 업무에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인수합병시 회계처리에 따른 회계적 비용과 세무적 비용 사이에 합리적 과세 방법에 대해 연구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Global) 기업이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에 대한 과세 근거를 연구하고자 한다.

### Ⅲ. 연구의 범위

2015년 전 세계 인수합병 규모는 약 3.8조불 규모이며, 이 중 미국 기업과 관련된 인수합병은 약 2조불 수준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인수합병 시장이며 가장 많은 경험과 금융 체계를 가진 국가이다. 인수합병 accounting, 인수합병 taxation, Cross-border Acquisition taxation등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세제의 발전 방향을 정립해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텍사스 주에는 삼성전자 Austin소재 법인, 석유공사, 삼성물산이 자원개발투자를 하면서 해외지주회사 인수합병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비즈니

스 스쿨 글로벌 순위 36위인 UT dallas의 Master of Science in Accounting 의 Tax track 과정을 통해 미국 글로벌(Global) 기업들이 사업구조 재편을 Aggressive Tax Planning(공격적 조세회피)<sup>4)</sup>로 조세회피 사례 연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다.

## 제2장 기업 인수합병개요

### I. 개요

#### 1. 기업 인수합병 정의

우리나라에서 인수합병은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IMF 이후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90년대 말 벤처기업의 우후죽순 발생이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2000년도 중반 벤처붐의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고(高)위험 고(高)수익이라는 벤처기업의 본질에 기초한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었다.

기업 인수합병란 둘 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단일회사가 되는 기업합병(Mergers) 그리고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대부분의 경우)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Acquisition)를 합친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용어이다.

기업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liquidation procedure)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인데 상법의 특별규정<sup>5)</sup>에 의한다. 여기에는 흡수합병(Absorption merger), 신설합병

4)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고 세수손실을 초래하여 국가재정기반을 위협할 수 있음.

5) 상법 제522조부터 제530조에 합병에 대해 규정함

(consolidation), 간이합병(Simplified merger), 소규모합병(Small-scale mergers and acquisitions) 등이 있다. 1)흡수합병(Absorption merger)은 합병 당사자 회사 중에서 하나의 회사(A)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B)는 소멸하여, 소멸회사(B)의 모든 권리와 의무(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를 존속 회사(A)가 포괄적 승계(Comprehensive succession)하는 합병을 의미한다. 2)신설합병(consolidation)은 둘 이상의 합병 당사회사가 신설회사(C)를 설립하여 합병당사회사(A,B)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회사(C)로 포괄적 이전을 하고 합병당사회사(A,B)는 별도의 청산절차(liquidation procedure)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다. 3)간이합병(Simplified merger)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대부분의 경우 합병 당사회사(A)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인한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흡수합병(Absorption merger)에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는 합병을 말한다. 4)소규모합병(Small-scale mergers and acquisitions)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Absorption merger)에서 존속회사(A)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필요 없는 합병을 가르키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 합병 중에서 대부분이 흡수합병(Absorption merger)이고 신설합병(consolidation)은 거의 없는데 실무적으로 신설합병(consolidation)은 흡수합병(Absorption merger)보다 절차와 업무가 복잡하고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인수(Acquisition)<sup>6)</sup>란 한 기업(A)이 다른 기업(B)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인수(B)의 매수 대상물에 따라 자산인수(property take over), 주식인수(subscription of stocks), 영업양수도(Business transfer)로 구분한다. 1)자산인수(property take over)란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대지와 건물 및 공장설비만 사들여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산인수(property take over)와 피인수 기업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인수(subscription of stocks)나 부실기업의 순자산을 인수기업(대부분 우량기업) 가져가는 자산부채이전과는 다르다. 자산부채이전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정리하면 인수기업인 우량은행은 피인수 기업인 정리대상 은행의 예금과 부채를 모두 떠났게 된다. 그러나 자산인수(property

6) 제335조, 제374조, 제418조가 해당한다.

take over) 및 방식은 인수기업(우량기업)이 피인수기업(부실기업)이 갖고 있는 과도한 부채나 영업권, 종업원 등을 인수하지 않는다. 2)주식인수(subscription of stocks) 및의 방법·효과·법적 성질은 경우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정한 수준의 지분 보유 비율은 안정적인 경영권의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며, 그 비율이 51%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며 기업 경영권 및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Affiliated official)을 포함한 최대주주 변경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주로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데 예를 들면 주식형으로 채권전환, 구주 매입, 신주 취득 등이 해당한다. 최대주주는 1인 또는 특수관계인(Affiliated official)을 포함할 수 있다. 3)영업양수도(Business transfer)는 양도자가 보유한 자산이나 권리의무는 물론 거래처와의 관계, 영업 비밀, 노하우(Knowhow)와 같은 경영조직의 사실관계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것이다. 양수인은 해당 거래를 통해 양도인이 가졌던 영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 2. 기업 인수합병 동기

기업은 자본, 기술, 경험 축적 등을 통해 제품의 다양화 및 새로운 사업분야의 진출 등 내적성장(Internal Growth)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거나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외부 자원 즉 다른 기업의 자산을 활용하여 외적 성장(External Growth)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시장 참여자와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동종 업종간의 수평적인 인수합병(Horizontal merger)<sup>7)</sup>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 등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자체 개발 시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투입되는 첨단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적 인수

---

7) A horizontal merger is a merger or business consolidation that occurs between firms that operate in the same space, as competition tends to be higher and the synergies and potential gains in market share are much greater for merging firms in such an industry.

합병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Diversification)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르는 경영 위험을 분산(Diversification of risks)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동기(Motivation)에 관한 이론은 크게 가치극대화 동기와 비가치 극대화 동기로 구분한다.<sup>8)</sup> 가치극대화 동기는 M&A로 인해 경제적 이익(economic profit) 혹은 정상 이익(normal profit)이 발생할 때 합병을 한다는 것이다. 세금이론, 시장지배력이론, 정보와 신호이론 등이 해당한다. 1)세금이론은 기업결합(인수합병)으로부터 세금 절세 및 회피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결손회사와 이익이 있는 회사가 결합할 때 세금공제효과, 대표적인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기초를 둔다. 즉 배당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자본차익을 실현하기위해 인수합병이 일어난다. 합병회사가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결손금이 없는 경우일자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적자가 예상되는 피합병회사와의 합병은 세금의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2)시장지배력이론은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증대나 독점 이윤을 갖고자 합병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물론 시장점유율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 효과(economy of scale)가 기업집중이라는 단점과 상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정보와 신호이론은 합병과정에서 증시에 알려지는 피합병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합병과정에서 과소평가된 대상기업의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면 대상 기업의 재평가가 이루어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비가치화 극대화 동기 또는 성장(Growth)극대화 동기는 매출(sales)이나 자산의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동기이론이다. 대리이론(Agency theory), 경영자 이론, 자기과시이론 등이 해당한다. 1)대리이론(Agency theory)은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 분리로 인하여 주주로 하여금 경영자 활동에 대한 감시 비용 발생등 대리 비용 해결을 위해 인수합병이 발생한다. 2) 경영자 이익이론이란 인수합병이 주주의 부(Wealth)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규모와 경영자의 보상

8) Halpern even study

(reward)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영자는 자신에 대한 보상이 기업 규모와 비례한다고 생각하므로 투자수익률(ROI)이 안 좋더라도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해 인수합병을 수행한다는 이론이다. 3)자기과시이론(self-display)은 인수기업의 의사결정자(경영진, 이사회)가 자기과신(self-display)으로 피인수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더 낮다는 객관적인 정보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평가가 더 정확하다는 판단으로 인수합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수합병은 그 동기가 어디에서 발생했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 인수합병 후의 기업가치가 기업 인수전의 기업가치보다 커진다고 할 때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양자의 가치차이에 의한 메리트를 Synergy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할 때 흔히 포함되어 있는 프리미엄은 Synergy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 3. 기업 인수합병 유형

#### 1) 거래 형태에 따른 분류

합병(Mergers)이란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완전히 통합된 것으로 합병 후 합병 추진기업의 존속 여부에 따라 흡수합병(Absorption merger)과 신설합병(consolidation)으로 나뉜다.①흡수합병(Absorption merger)은 한 개의 기업(A)은 합병 후 법률적으로 존속하며 다른 합병대상기업(B)은 합병 후 소멸한다. ②신설합병(consolidation)은 합병대상 기업들(A,B)이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기업(C)을 신설하여 해산된 기업(A,B)의 법적 및 경제적 지위를 승계한다.

인수(Acquisition)란 인수기업(A)이 피인수기업(B)의 경영지배권을 갖기 위해 피인수기업(B)의 자산 혹은 주식을 획득하는 M&A방법이다. ①주식인수(subscription of stocks) 및은 피인수기업의 주식만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데 대주주(Large Shareholders) 주식 지분의 취득, 주식시장을 통한 공개매수<sup>9)</sup>(TOB: Take-over Bid) 등이

9) 및기업의 주주들에게 일정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제안을 내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을 통해 경영

있다. ②자산취득이란 인수기업(A)이 피인수기업(B)의 자산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로 둘 다 소멸하지 않는다.

## 2)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

수평적, 수직적, 혼합적 인수합병으로 구분한다. ①수평적인수합병(Horizontal merger)은 동종 산업 내에서 경쟁 기업 간의 M&A을 의미한다. 기업규모 증대(economy of scale)를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독과점기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점유율이 일정 비율이 넘는 기업간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있다. ②수직적(Vertical) 인수합병은 어떤 제품, 상품 혹은 서비스(service)에 대해 생산라인에서 서로 다른 단계를 담당하고 기업들 간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자동차업계의 경우 수직적 인수합병을 설명하자면 철강업체, 자동차 각 부품 공급업체, 해당 회사의 자동차 제조 및 소비자로의 판매업체간의 M&A가 이에 해당된다. 수직적 통합에 의해 원가절감(cost reduction)될 수 있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를 통해 제조 및 판매 그리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산업부문이 서로 달라 합병 후 조정이 안될 경우, 역Synergy(Reverse synergy)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혼합적 인수합병((Horizontal & Vertical)은 비관련 업종 간 인수합병을 말하며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Portfolio를 확장하고 기업경영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risk diversification)시킬 수 있다.

## 3) 거래당사자들의 의향에 따른 분류

우호적 인수합병(Friendly merger)과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우호적 인수합병(Friendly merger)은 인수기업(A)의 활동이 피인수(B)경영진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M&A을 말하며, 합병과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피인수 및기업 입장에서 인수합병 synergy effect가 발생하고 경영진이 인수 및대가를 받고자하는 목적이 있을 때 우호적 인수합병이 발생한다. ②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merger)은 인수기업(A)이 피인수기업(B)의 대주주,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의 주식을 획득하게 된다.

이사회 혹은 경영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서 피인수 및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것으로써 주로 공개매수(TOB)나 위임장 투쟁(proxy fight)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공개매수(TOB) 미국, 유럽연합(EU)과 같이 기업 간 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에서 일반적인 방법이다. 위임장 투쟁은 인수 및 시도하는 측이 피인수기업의 주식 중 일부만을 취득한 후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대다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장(proxy)을 받아서 자신의 의도대로 이사진을 선출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Hostile takeover의 방법에는 새벽기습(dawn raid),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에서 인수 및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과 곰의 포옹(Bear's hug), 곰이 몰래 안는 것처럼 기습적으로 인수의사를 전달하여 인수 및 대상기업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는 것이다. 주말에 공개매수를 제의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를 가리켜 Saturday night special이라고 한다.

#### 4) 결재수단에 의한 분류

합병(Mergers)의 경우 기존주주(A)에게 신설법인(C) 혹은 존속법인(A 또는 B)의 주식을 교부한다. 인수(Acquisition)의 경우에는 인수기업이 피인수 및기업 혹은 그 주주들에게 인수합병 대가를 현금, 주식교환, 차입으로 지불한다. ①현금인수(Cash acquisition)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전부 현금으로 지불하고 인수하는 방법이다. ②주식교환인수(stock exchange acquisition)란 피인수기업(B)의 보통주식에 대해 인수기업(A)의 보통주식과 일정비율로 교환해 주는 방법을 말하며 때로는 인수기업의 회사채와 교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③차입인수(LBO)<sup>10)</sup>란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및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인수 및하며 인수 및이 완료된 이후에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 4. 인수합병 대표적 사례

---

10) LBO(Leveraged buyout)



## 1) 하이닉스(현대전자-LG반도체)

1999년 10월 IMF 구조조정(restructuring) 빅딜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반도체 부문에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합병하여 하이닉스가 탄생했다. 합병절차에 따라 합병법인인 하이닉스는 LG반도체에 지불해야 할 인수대금 2조6천억원 등 총 6조 5천억원을 부담했다. 초기에는 하이닉스 인수합병은 현대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와 LF반도체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무시하고 각사의 독자적인 기술방식 및 생산시스템 등으로 고려하지 못해 Synergy 효과가 약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경기의 회복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로 도약했다.

## 2) Pfizer와 Warner-Lambert 합병

1999년 11월 Warner-Lambert는 America Home Product(AHP)에게 인수 및 제의를 하고 713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합의했다. Pfizer는 이 둘의 합병을 막고자 Warner-Lambert에게 750억 달러의 합병을 제한했으나 Warner-Lambert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Pfizer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주주에게 이로운 우호적인 인수 및 안을 거절했다’는 이율로 Warner-Lambert 이사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Warner-Lambert는 Pfizer의 수익의 40~50%를 차지하는 Repatha(혈중 LDL콜레스테롤 강하제)에 대한 공동마케팅계약 파기를 주장하면서 이를 방어했다. Pfizer 와 America Home Product(AHP)의 인수 및 경쟁은 Pfizer의 승리하면서 America Home Product(AHP)에 18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Warner-Lambert를 주식교환방식으로 인수 및 했다. Pfizer는 합병대가로 Warner-Lambert의 주식 1주당 Pfizer주식 2.75주(주가 98.31달러)을 교환함으로써 Warner-Lambert는 인수 및 가격을 900억 달러로 높였다. 양사는 Repatha(혈중 LDL콜레스테롤 강하제)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과거부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합병과정에서 Warner-Lambert의 이사 8명이 합병회사의 이사로 참여하고, 합병 Task team을 공동 지휘하여 균형있는 조직통합을 추구했다. 중복조직을 정리하여 2002년까지 총 16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인수합병 이후 Pfizer는 양사제품이 결합되어 제품라인과 시장점유율이 확대 되었다. Pfizer(합병회사)의 연간 매출액 280억 달러(전문의약품 210억 달러 차지함), 시장가치(Market Value)는 2,300억 달러의 회사로 성장했다.

## II. 최근 인수합병관련 국제 이슈

### 1. 유럽연합(EU)의 동향

6월27일자 AP통신에 따르면<sup>11)</sup>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가 Google에 반독점 위반 혐의(Antitrust fine)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억 유로(약3조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영국은 조세회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Google Tax(구글세, 정식 명칭은 수익우회세)를 도입하였다. 구글세란 글로벌 기업이 세율(Tax rate)이 높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 이익을 특허료, 상표권, 이자 등의 저세율이 국가로 넘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조세 회피를 하고자 저세율국가에 자회사 및 지점을 설치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특허료(Patent fee) 및 이자(Interest)를 이전하는 방식인 것이다. Google Tax는 2014년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글로벌(Global)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단속하겠다고 언급한 널리 쓰이게 되었다. Google은 당시 많은 기업들이 활용했던 ‘Double Irish(더블아이리쉬)’ 조세회피 기업에서 발전한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더블아이리쉬 샌드위치)’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이를 조세회피에 이용함으로써 EU 과세관청의 집중 타겟이 되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Double Irish’란 글로벌(Global)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Ireland)<sup>12)</sup>에 자회사를 세워 여러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Royalty,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들 자회사에 송금하고 이익을 자회사에 몰아준 뒤 해당 법인의 근거지를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Ireland)에 두고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해 왔다. 아일랜드

11) EU hits Google with record €2.4bn euro antitrust fine(AP, 2017.06.27.)

12) 법인세율은 12.5%이나 최근 지식개발상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6.25%로 낮추게 되었다.

드(Ireland) 세법상 이를 활용하려면 두 개의 법인이 필요해 ‘Double Irish’ 또는 ‘Dutch Sandwich’라고 한다.



그림1) ‘Death of the Double Irish’ Oct 18<sup>th</sup> 2014 by Economist

미국의 글로벌(Global) 기업인 구글은 전체 매출의 80%가 미국밖에서 발생하는데, 미국 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평균 2.4%의 세금만 내고 있다. 또한 영국의 일간지 ‘The Guardian’에 따르면 구글의 영국내 매출액은 56억 달러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3,060만 달러에 불과했다. Google 뿐만 아니라 Apple, Facebook 등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을 이용해서 조세회피(Tax avoidance)를 하는데 ‘Double Irish(더블아이리쉬)’에서 한 단계 발전한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더블아이리쉬샌드위치)’ 기법이다.

특히나 Apple, Google 등 Digital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쉽다. 이익이라는 것이 로열티(Royalty)같은 무형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이는 어디에서든 팔릴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 몇 장으로 다른 국가에 세운 Paper company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 Apple이 개발한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더블아이리쉬샌드위치)라는 기법은 세율이 35%인 미국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Irish와 Netherlands를 이용하여 Caribbean과 같은 조세피난처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Martin A. Sullivan의 연구에 따르면

Apple은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2011년 한 해 동안 \$2.4 billion(약 2.5조원)의 세금을 줄였다.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Numerous companies take advantage of loopholes in international laws to move profits around the world, avoiding taxes. Many of these techniques rely on transferring profits on patent royalties to places like Ireland. Here is one technique typical of what Apple and others pione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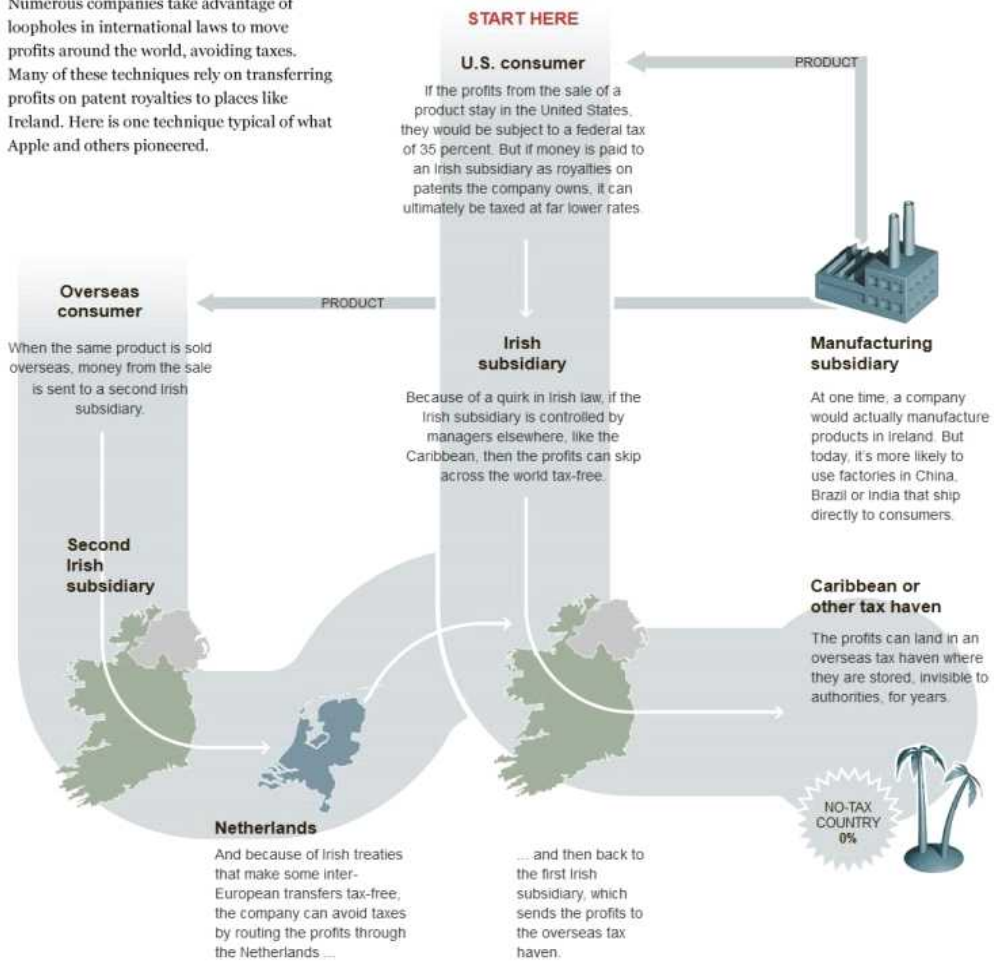


그림2) 출처 : Zerohedge

위 그림에서 보듯이 일단 세금이 아예 없는(Tax haven) 조세회피지역, 예를들면 버뮤다나 버진아일랜드(Ireland)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다. 구글 버뮤다는 아일랜드(Ireland)에 '구글 아일랜드(Ireland) Subsidiary'라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 구글 아일랜드(Ireland) 자회사'는 다시 '구글 아일랜드(Ireland) Second'를 세운다. 구글은 전 세계 영업권과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을 구글 아일랜드

(Ireland) 자회사에 넘겨주고, 구글 아일랜드(Ireland) 자회사는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구글 아일랜드(Ireland) 세컨드에 넘겨준다. 아일랜드(Ireland)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외국인인 구글버뮤다의 직접 자회사인 구글 아일랜드(Ireland)는 세금을 안낸다. 그런데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 및 영업을 통해 이익을 걷어들이는 구글 아일랜드(Ireland) 세컨드의 이익을 구글 아일랜드(Ireland) 자회사에 보내야만 세금을 안내는데, 아일랜드(Ireland) 세법에서는 로열티(Royalty) 송금시 원천세율 20%을 내야한다. 그래서 구글은 자회사에서 송금받는 로열티에 대해서 원천징수(withholding tax)하지 않는 아일랜드(Ireland)와 네덜란드 조세협약(Tax treaty)을 이용해서 ‘구글 네덜란드’라는 페이지 컴퍼니를 네덜란드에 설립하는 것이다.

## 2. BEPS 프로젝트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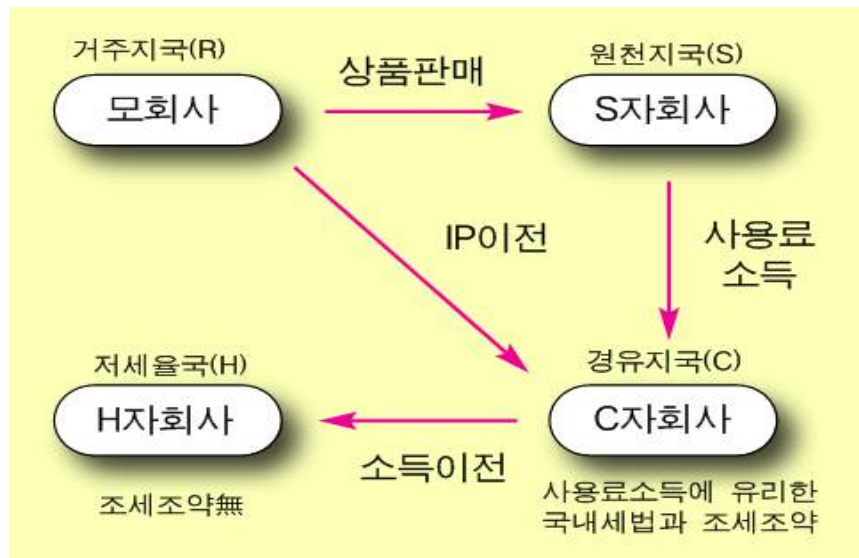


그림3) BEPS(Base Erosion and Porfit Shifting): 원천지국(S자회사) 또는 거주지국(R모회사)에서 수행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이 제3국의 저세율국(H조세조약없음)으로 이전, 즉 Profit Shifting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과세기반이 잠식되는 Base Erosion 발생하는 것. (그림출처: 세무사신문 680호)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글로벌(Global) 기업의 현지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Global)기업의 소득이전을 이용한 세원잠식방지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되면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른바 ‘Google Tax’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글로벌기업들의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대 2400억달러(약 2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EPS 프로젝트에 합의한 한국의 경우에도 2013년 사업연도 기준 국내 소재 9,532개의 해외법인(자회사, 지점포함) 중 4,752개 업체, 전체 49.9%가 법인세(Corporate Tax)를 내지 않았다. 특히 Google Korea와 Apple Korea 등은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LLC)<sup>13)</sup>로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수익 구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BEPS 프로젝트 이행차원에서 2015년 12월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개정하여 BEPS 방지를 위한 project 과제인 ‘개별보고서’와 다국적기업이 주로 제출하는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6년 4월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대상 기업과 제출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었다. 개정된 국조법과 시행규칙, 고시에 따라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하고 국외 특수관계인(Affiliated official)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 초과인 우리나라 회사(한국에 본점 소재지)나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소재지)의 한국지사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특수관계자(Affiliated official)간 거래 현황과 이전가격(TP)에 대한 보고서인 ‘개별기업보고서’와 글로벌(Global)기업의 전체 구조를 볼 수 있도록 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내)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통합기업보고서는 글로벌(Global)기업의 소유구조, 자회사 및 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설명 등

---

13) A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is a corporate structure whereby the members of the company cannot be held personally liable for the company's debts or liabilitie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e essentially hybrid entities that combine the characteristics of a corporation and a partnership or sole proprietorship.

도 포함되어 있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구조조정 (restructuring)이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의 지배 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과세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3장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와 세제

#### I. 개요

##### 1. 우리나라 인수합병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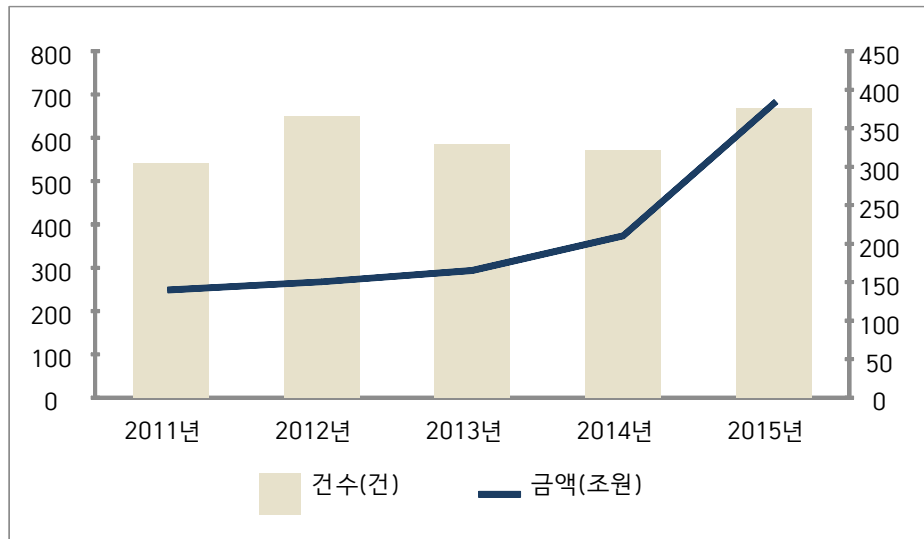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수합병시장은 크게 IMF 구제금융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19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가운데 인수합병형 투자는 거의 없었으나 199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형 투자가 급증하여 1998년과 1999년도에는 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2014년 기준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는 약 49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49%를 차지했다.

표3) 최근 우리나라 유형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백만달러(\$))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수합병형	금액	2,880	1,901	1,466	3,475	4,119	4,772
	비중	42.6%	35.0%	22.2%	32.5%	42.0%	48.8%
그린필드형	금액	3,876	3,535	5,140	7,225	5,683	5,001
	비중	57.4%	65.0%	77.8%	67.5%	58.0%	51.2%
금액합계		6,756	5,437	6,607	10,701	9,802	9,773

## 2. 기업결합 주체별 동향(2015년 기준)<sup>14)</sup>

### 가) 최근 5년간 기업결합 동향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sup>15)</sup> 건수는 534건, 금액은 56.3조 원이며,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sup>16)</sup> 건수는 135건, 금액은 325.6조 원이다. 전체 기업결합 669건 중 해당 기업결합으로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354건(52.9%)이며,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sup>17)</sup>는 315건(47.1%)이다. 수단별 기업동향을 보면 주식 취득(258건, 38.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합병(160건, 23.9%), 회사 설립(94건, 14.0%), 영업양수(83건, 12.4%), 임원 겸임(74건, 11.1%) 순이다.

14) 2015 기업결합 심사 동향, 공정거래위원회, 2016.02.발간자료

15) 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 및(국내-국내, 국내-외국 간 기업결합)함.

16) 외국 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 및(외국-국내, 외국-외국 간 기업결합)함

17) 지분비율이 크지 않아 상대회사를 지배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계열 회사 간으로 지배관계가 기업결합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경우



### 3. 우리나라 인수합병 시장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2014년, 5년간 글로벌 인수합병 시장은 51% 성장, 한국은 3배로 성장했다. 2014년 전세계 인수합병 거래금액은 3.48조 달러(\$)로,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51%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M&A market은 2014년 88조원으로, 즉 5년 전에 비해 3.1배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M&A 시장은 앞으로 더 활발할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1)신규 투자보다 인수합병을 선호하고, 2)창업주들의 은퇴 및 상속 과정에서 기업 매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3)대체투자(AI)가 활발해지고, 4)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시장의 확대, 5)정부의 인수합병 활성화 대책을 들 수 있다.

### 4. 우리나라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방법(원샷법)

표4) 원샷법의 주요내용 출처: 유진증권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지주회사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li> <li>■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에서 50%로 조정</li> <li>■ 합병으로 순환출자 형성 시 현행 6개월내 해소해야 하나 1년으로 연장</li> </ul>
간이합병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합병회사 주식의 90%이상 보유했을 때 가능했던 간이 합병 기준을 2/3이상 보유로 완화</li> </ul>
소규모합병 요건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시 발행신주가 주식총수의 20%(기존 10%)를 넘지 않으면, 주총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 가능</li> </ul>
주총 소집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총 소집 시 관련 절차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li> </ul>
주식매수 청구권행사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을 주총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li> <li>■ 청구된 주식에 대한 상장사 매입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li> </ul>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라 불림) 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흩어져있는 기업의 사업구조재편과 관련된 절차, 규제를 묶어 한번에 정리해주기 위한 법이다. 소위 원샷법(Oneshot)이라고 부르며 공급 과잉(oversupply) 업종의 M&A, 주식교환 등의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도록 한다. 이 법을 적용시 이전에 최소 120일이 소요되는 합병 절차를 최소 4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원샷법 적용 대상에는 중소기업(통상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견기업(통상적으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자본금 1천억원 이상)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 대상(한국 기업 집단 중에서 계열사의 자산을 합쳐 10조원이 넘는 것) 61개 대기업집단도 포함됐다. 이에 재벌 오너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자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재편(reorganization) 및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통한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Affiliated official)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 대상으로의 승인이 거부되도록 했다. 또 원샷법 승인 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승인을 철회하도록 했다.

전문가 4명(국회 추천)이 포함된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원샷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을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집단)<sup>18)</sup>에 속하는 대기업의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 내 부채비율(debt ratio, 자기자본에서 타인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를 넘는 계열사는 채무보증 특례에서도 배제된다.

기존 간이합병(Simplified merger)의 따르면 합병회사(A)가 피합병회사(B)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합병이 가능했으나 원샷법에서는 주식보유비율을 80%로 완화했고, 합병 후 발행된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이전 10%)를 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간이합병이 가능하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략화했으며 지주회사 규제

18) 2016 기준으로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를 지정함.

는 3년(이전 1~2년)으로 유예기간을 늘렸다. 해당 법 유효기간 역시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소규모 합병 요건을 완화했는데 피합병회사의 규모가 작아 합병회사가 발행 및 지급하는 신주가 합병회사 전체 주식의 10%이하면 주주총회의 승인 요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이 가능했다. 원샷법을 통해 발행하는 신주를 합병회사 전체 주식의 20%이하로 완화해서 합병시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해도록 했다.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 통상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원샷법은 해당 소집에 걸리는 시간을 1주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기업이 인수합병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간편하도록 개정했는데 신청기한을 기존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고 해당 기업이 주식을 매수해야하는 기한을 기존 1개월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해 인수합병 이후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했다.

상법 제523조에 의거 합병당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합병을 규정했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도 모회사 주식을 지급가능하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역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회사 분할합병시에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해당 모회사 주식을 취득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삼각분할합병제도를 도입했다.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은 모두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시 합병대가로 자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데 있으며 차이점은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target company인 피인수기업을 합병 즉 target company 소멸하나 역삼각합병은 자회사가 target company인 피인수기업에 합병되어 자회사가 소멸한다는 점이다. 삼각합병과 삼각분할합병의 차이점은 사업부를 떼어내 넘겨주는 회사가 즉 분할회사가 합병 대가를 받기에 target company 피인수기

업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받는 삼각합병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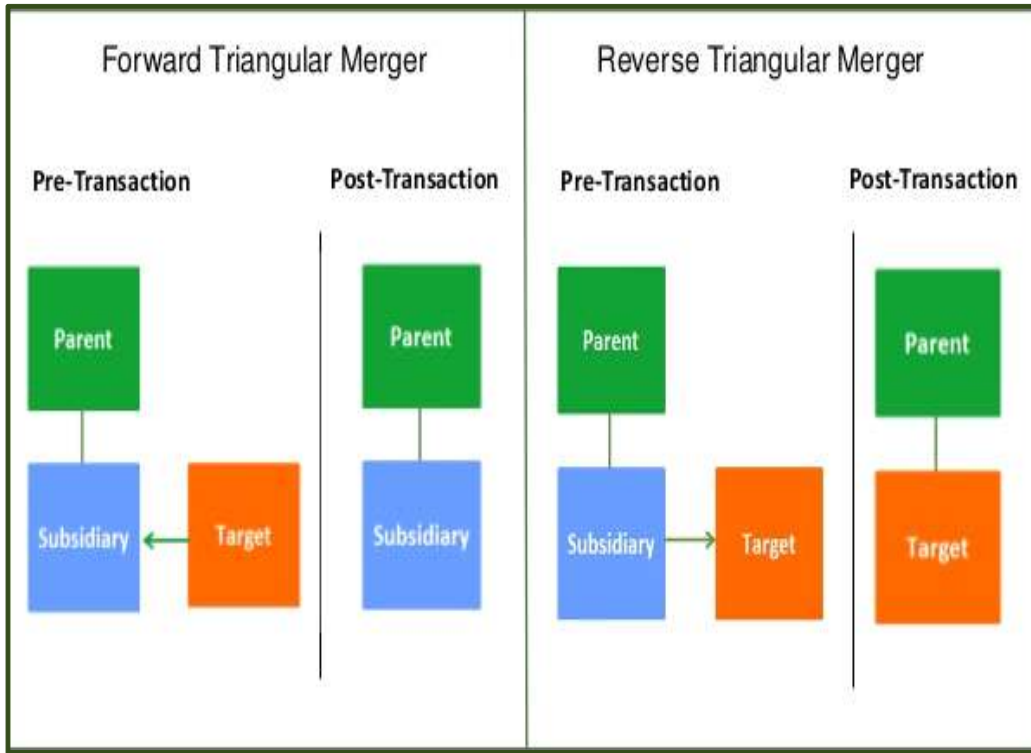


그림 8) Triangular Merger란 Acquiring 회사의 자회사인 S회사가 Target회사를 합병하면서 소멸하는 Target회사의 주주에게 Acquiring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 Reverse Triangular Merger란 Acquiring회사의 자회사가 Target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그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고 Target 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 (출처: The tax adviser 닷컴)

앞으로 원샷법을 통해서 조선, 철강,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경쟁력 없는 분야에 자원을 덜 배분하고 이를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육성, 가상현실, 인공지능, 전기차 등에 인수합병을 통해 진출하려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경쟁이 몰리는 내수산업의 정리를 통한 대형화, 전문화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II. 국내 구조조정(restructuring)세제

### 1. 개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도입된 구조조정(restructuring)세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법인간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전제로 입법화 되었다. 구조조정은 주로 합병, 영업 및 자산의 양수도, 주식양수도 등의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관련 세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아래표에 열거한 세금을 적격요건<sup>19)</sup>을 갖추면 각종 조세에 대해 과세이연을 규정한다. 이런 적격요건을 갖추면 qualified transaction(적격거래)라고 하고 적격요건을 못 갖추면 non-qualified transaction(비적격거래)라고 부른다.

합병에 대한 우리세법의 과세체계는 피합병법인에 누적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을 합병을 통해 당사자에게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기본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어 자본이득에 대해서 restructuring의 주체인 법인뿐만 아니라 restructuring의 대상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도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sup>20)</sup> 합병 당시 법인의 주식을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한다. 주식(지분)이 M&A거래시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가액의 0.05%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된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계약상 혹은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격요건을 못갖춘 restructuring의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련되어 있어 M&A에 국한된 세금이라고 할 수 없다.

19) 거래란 과세특례요건(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거래를 가리키는데 과세특례 요건 자체를 적격 요건이라고 부른다.

20) 우리세법에서는 주주가 기존 주식을 이전하고 합병대가로 새로운 주식을 받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다.

구분	납세의무자		관련세금
합병	피합병법인		√ 자산양도에 따른 손익에 대한 법인세 √ 부가가치세
	합병법인		√ 합병매수차익손에 대한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주주		√ 합병대가에 대한 소득세:의제배당 √ 불공정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합병법인의 주주		√ 불공정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영업(자산) 양수도	영업(자산) 양도인	법인	√ 영업(자산)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 고저가양수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 부가가치세
		개인	√ 양도소득세 or 사업소득세 or 기타소득세 √ 고저가양수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 부가가치세
	영업(자산)양수인		√ 취득세 √ 고저가양수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주식양수도	주식양도인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고저가양수도의 경우 증여세
	주식양수인		√ 과점주주의 취득세 √ 고저가양수도의 경우 증여세

표 2 ) M&A에서 발생한 세금 이슈 정리표

## 2. 합병 관련 구조조정(restructuring)세제

우리나라 구조조정(restructuring)세제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B)이 자산을 합병법인(A)에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손익(‘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순자산장부가액<sup>21)</sup>’)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sup>22)</sup> 합병에 대한 과세 체계를 아래그림과 표를 이용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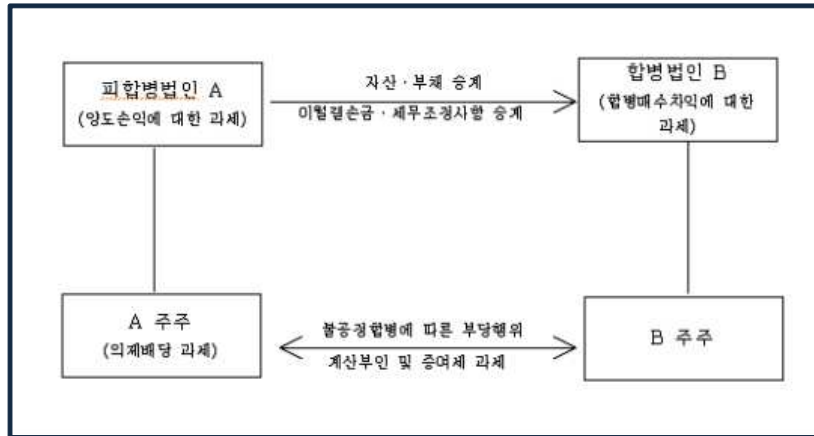


그림 9 ) 합병에 대한 과세 체계

구분(납세의무자)	과세 요인
합병법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매수차익 및 차손에 대한 손익금산입</li> <li>✓ 영업권의 손익금산입</li> <li>✓ 세무조정사항 및 조세혜택 등의 승계</li> <li>✓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 처분손익</li> </ul>
피합병법인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li> <li>✓ 부가가치세</li> </ul>
합병법인B 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li> <li>✓ 불공정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li> </ul>
피합병법인A 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대가에 대한 의제배당과세</li> <li>✓ 불공정 합병시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li> </ul>

21) 자산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을 뺀 금액

22)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1) 적격요건

형식적 조직재편에 지나지 않는 적격합병의 경우라면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법인세법 제44조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적격요건

- ✓ 사업목적요건: 합병등기일 당시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
- ✓ 지분의연속성요건: 첫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로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기준에 의거 배정되어야 하고 둘째,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까지 지분의 50%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 ✓ 사업의계속성요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구조조정 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할 것

## 2)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

### ① 피합병법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적격합병에 해당하면, 피합병법인은 본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속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피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손익은 "0"이 된다. 과세되지 않는 양도손익은 합병법인에게 carryover 되어 과세된다.

## ② 합병법인→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비적격합병에 해당하면 구조조정시 합병법인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순자산의 시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합병매수차손익으로 인식한다. 합병매수차익은 기업회계에서는 염가매수차익(당기수익)으로 인식하는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시가 이하로 취득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80조의 3에서는 합병매수차익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80조의 3에서는 합병매수차손을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기업회계에서는 영업권을 상각않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을 양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 ③ 피합병주주→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합병대가(합병법인의 주식가액+합병교부금)에서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되는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법인이면 법인세를 개인이면 소득세 납세의무를 갖게 된다. 이러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에 누적된 미실현이익이 주주에게 실현된 것으로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미실현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하려는 것이다.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의 평가는 원칙은 시가이나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을 인정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합병법인에게 합병차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을 과세하는데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합병대가(합병법인의 주식가액+합병교부금)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매수차익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된다.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전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납입한 자본으로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차익, 즉 주식발행초과금과 합병매수차익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이를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여부를 판단한다.

순서	구분	내용	의제배당 여부
1	자산조정계정	순자산시가-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	o
2	합병감자차익	피합병법인의 자본금-합병대가(액면가액)	x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승계액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	x
		과세된 자본잉여금	o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		o

표 5 ) 순서에 따라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한다.

### 3) 적격합병 과세이연 사후관리 규정

#### ① 자산조정계정 일반론

적격요건에 해당하면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과 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인식한다. 합병당시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 △유보인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유보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가산한다. 그리고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보 잔액과 유보 잔액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합병당시 감가상각자산 이외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세무조정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을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한다.

## ② 과세특례 중단규정(2년이내 폐업)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a)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a+1)로부터 2년이내에 첫째,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둘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50%이상 처분하면 사유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조정계정은 없어진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의 계속성여부를 판단하고,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다고 판단한다.

## ③ 과세특례 중단규정과 영업권 처리

합병매수차익, 즉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시가가 합병법인이 피합병인에 지급한 양도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금액에 일정한 금액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익금산입한다. 한편 합병매수차손, 즉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시가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매수차손의 생성원인이 영업권인 경우에만 일정액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산입한다.

## 4) 구조조정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규정

### ① 적격요건 만족시 이월결손금 승계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하고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결손금 즉 이월결손금을 승계한다. 해당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미공제잔액을 말한다. 또한 합병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5년이내에 시작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서 개시일 전에 승계하여 공제한 결손금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한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2년이내 과세특례요건 중단사유<sup>23)</sup>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 ②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규정

법인세법 제45조 제①항에 의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도 제한하는데 합병법인의 세무상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이전 기존사업에서 소득금액 발생할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세무상 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③ 적격요건 만족시 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제한규정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후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처분손실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합병 이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은 합병 이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게 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이를

23) , 사업계속성 중단요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둘째, 지분의 연속성 중단요건,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50%이상을 처분요건

반대로 이용하여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합병법인이 합병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을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 2. 인적분할 관련 구조조정(restructuring)세제

### 1) 개요

Split-up(기업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새로운 하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업의 사업구조, 경영구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기업분할은 특정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 이를 진행하게 쉽게 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할 때 이용할 수도 있다. 인적분할이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유형으로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의 경우에도 가능하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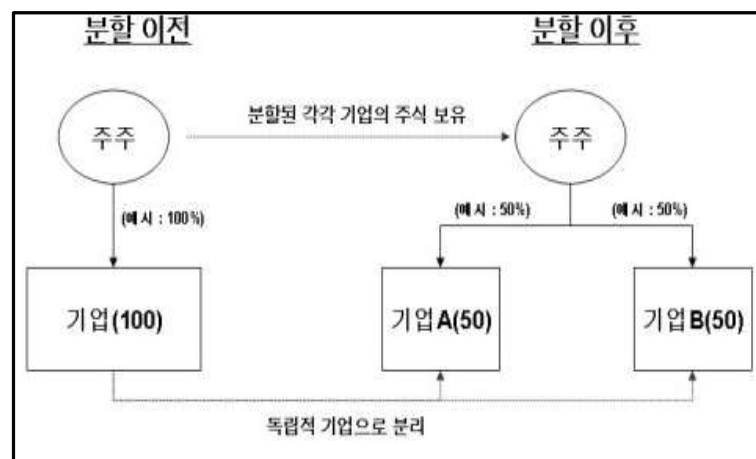


그림 10) 분할 기업에 대한 수평적 소유

24)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불완전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 후에도 축소된 형태로도 존속한다.

삼성SDI	내용	에스케이컬	내용
분할법인	적격분할 양도가액과 처분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 분할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압출기장충당금을 설정해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 가능. 과세이연(분할 시점에서 양도차익 과세하지 않음)	분할신설법인	분할로 인한 취득자산은 시가 평가하고 발행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함.
	비적격분할 분할시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함		
분할법인 주주	과세 없음	분할신설법인 주주	과세없음

표 6 ) 분할 관련 과세 사례

2)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구분(납세의무자)	과세 요인
분할법인	√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신설법인	√ 분할매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법인주주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

### 적격요건

- ✓ 사업목적요건: 합병등기일 당시 5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일정요건<sup>25)</sup>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 ✓ 지분의연속성요건: 첫째,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80%이상)이 주식으로서 해당 주식이 분할법인의 기존주주가 소유하던 보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고 둘째, 분할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 등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분할 관련 배정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된다.
- ✓ 사업의계속성요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구조조정 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할 것

### 3)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제도

#### ① 분할법인→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법인세법 제46조에 의거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미실현손익이 분할로 인해 실현되었다고 간주하여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손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본 구조조정 거래와 관련한 양도가액은 분할교부주식가액, 분할교부금, 분할합병포합주식에 관한 분할합병교부주식 교부 간주금액,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등이 합계액을 말한다. 여기서 법인세법 제46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적격요건을 만족하면 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당시 장부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손익을 “0”이 된다. 적격분할이 의미하는 바는 분할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 해당 사업 활동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소득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 또는 감가

25)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둘째, 분할하는 사업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 승계되는 것 셋째, 분할법인만 출자해서 분할하는 것

상각을 할 때 과세된다.

## ② 분할신설법인→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문제

비적격분할에 해당되면 법인세법 제46조의2 제①항에 의거 분할법인의 자산을 분할등기일 당시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취득해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만약 분할법인에게 지불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 자산의 시가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분할매수차익 또는 분할매수차손으로 처리한다. 분할매수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분할해서 익금에 산입하고 분할매수 차손은 그 발생원인이 영업권<sup>26)</sup>인 경우에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분할해서 손금에 산입한다.

적격분할에 해당되면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③항에 의거 분할법인에게 지불하는 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당시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0”원으로 간주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받은 자산과 부채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후 해당 자산을 처분 또는 감가상각하는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리고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과세특례중단사유 발생시<sup>27)</sup>에는 자산조정계정 잔액 유보 또는 △유보를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 ③ 분할법인 주주→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혹은 소득세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대가(분할교부주식가액 및 분할교부금)에서 분할로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인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인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분할교부주식

26) 분할법인과 상호거래관계, 그밖에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해당한다.

27) 첫째, 사업의 계속성 중단사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당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둘째, 지분의 연속성 중단사유로 분할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 등이 분할 당시 받은 전체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가액 평가시 시가가 원칙이나 과세특례요건을 만족하면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①항에 따르면 분할등기일 당시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분할대가를 차감한 분할차익이 발생하는데 기업회계는 이를 인식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면 분할차익 중 분할매수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된 잉여금에 해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매수차익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분할차익 중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납입자본으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에 의한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분할차익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며 이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여부는 아래와 같다.

순서	구분	내용	의제배당 여부
1	자산조정계정	순자산시가-분할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	o
2	분할감자차익	분할법인의 자본금-분할대가(액면가액)	x
3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승계액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	x
		과세된 자본잉여금	o
4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		o

표 9 ) 순서에 따라 분할차익을 자본전입한다.

#### 4)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 규정

##### ① 적격분할과 이월결손금 승계

법인세법 제46조5 제③항에 의하면 존속분할에 해당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그러나 적격요건을 만족한 적격분할에 해당시 소멸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

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세무상 결손금 중에서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세무상 결손금을 승계한다.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세무상 결손금으로 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과세특례 중단사유 발생시 그 사유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다.

## ②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규정

법인세법 제46조의4 제①항에 의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 계산시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③ 적격분할합병 경우 자산처분손실의 손금 불인정

법인세법 제46조의4 제③항에 의거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합병 이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을 분할합병 이전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금액에 한해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리고 손금불산입한 해당 자산처분손실<sup>28)</sup>은 분할합병 이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결손금이므로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과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불가 규정을 적용한다.

## 5) AP시스템의 인적분할 사례

OLED 제조장비 업체로 코스닥에 상장된 AP시스템은 2016년 매출액 5,550억원, 영업이익 323억원, 그리고 순이익 275억원이었으며 분할등기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7,130억원이다. 2017년 3월 1일 존속회사 APS홀딩스와 사업회사 AP시스템으로 인적분할하며 지주 회사 체제가 되었다. 인적분할의 목적이 크게 경영 효율성제고와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AP시스템의 사례의 경우 인적분할을

28)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발생분까지

통해 경영권을 유지할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했다. 즉,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장비사업으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적분할 하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가가 상이하게 움직이는데 이는 인적분할 당시 분할 기준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두 회사를 분할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AP시스템은 분할법인인 APS홀딩스의 주가는 최대 하락폭이라는 결과를 분할신설법인인 AP시스템은 최대 상승폭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시장이 분할 당시 평가된 분할법인의 가치가 고평가되었다고 분할신설법인의 가치는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대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세제

#### 1)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개요

물적분할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형태로 분할법인이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분할은 인적분할의 형태이나 상법상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물적분할은 기본적인 과세체계가 현물출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은 기본적으로 분할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인적분할에 해당하면 분할법인이 당해 사업부문의 순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손익을 계산하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자신이 분할대가를 받기 때문에 사업부문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둘째,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매수차익, 분할매수차손, 영업권에 대한 과세문제가 없다. 셋째, 분할법인의 주주의 경우 분할대가를 지급받지

도 보유주식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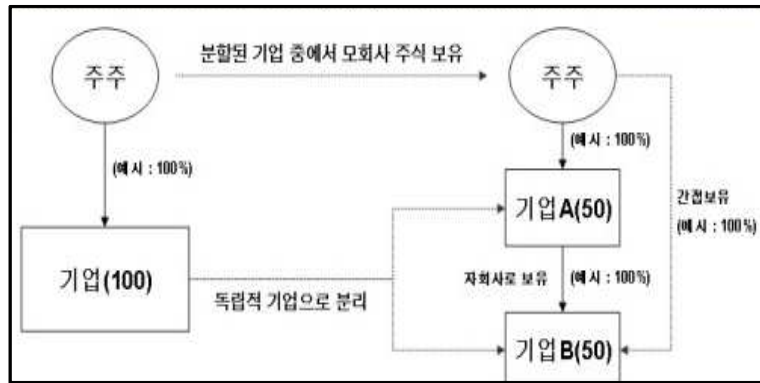


그림 11) 분할기업에 대한 수직적 소유(모회사와 자회사의 형태로 기업분할)

위 그림에서 보듯이 분할법인이 기업A은 사업부문의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업B는 자회사를 분할설립하는 형식적 조직개편이 불과하므로 분할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과세 이연을 해줘야 한다.

## ② 물적분할시 사업부문 처분이익 과세특례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의 경우에도 1)사업의 목적성,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함, 2)지분의 연속성, 분할합병의 경우 80%이상 주식이 분할 법인 주주의 소유비율에 따라 배정, 3) 사업의 계속성, 분할 신설법인은 분할로 인한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분할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영위 등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물적분할 중 적격분할의 요건을 만족하여 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sup>29)</sup>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첫째, 분할법인이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둘째,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토지, 주식, 출자지분, 감가상각자산

29)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손금산입하는 양도차익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을 처분하는 때<sup>30)</sup> 해당 사업연도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③항에 의거 과세특례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에 산입한다. 과세특례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의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폐지시 둘째, 분할법인이 분할 대가로 받은 주식 총수의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다.

### ③ 물적분할 최근 사례

물적분할로 인한 과세체계를 삼성SDI와 롯데케미컬과의 M&A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삼성SDI의 케미컬 사업부문과 화학부문의 지분을 약 3조원에 롯데케미컬에 매각한 것인데, 삼성SDI는 케미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서 분할신설법인인 에스케미컬을 설립하고 그 주식의 90%를 롯데케미컬에 매각하는 형식이다. 삼성SDI가 적격분할을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가 없다. 또한 취득세 면제대상(농특세 과세는 대상)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삼성SDI가 분할 이후 다음 네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과세이연을 중단하고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때,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처분한 때, 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분할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폐지한 때, 4)분할법인이 소유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가 이에 해당한다.

## 2)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0) 분할법인에게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내 통지해야함

## ① 개요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 양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별자산을 다른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현물출자시 법인은 개별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출자한 자산의 주인이 현물출자한 법인에서 현물출자 받은 법인으로 바뀌는 형식적 변경에 불과하므로 적격요건 만족시 과세이연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적격 현물출자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적격요건

- ✓ 사업목적요건: 현물출자일 당시 5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던 출자법인의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sup>31)</sup>을 출자할 것
- ✓ 지분의연속성요건: 첫째, 현물출자 법인은 현물출자일 다음날 현재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0%이상을 보유하고 둘째, 현물출자법인은 해당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 ✓ 사업의계속성요건: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 공동출자시 특수관계여부: 다른 내국인 혹은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시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 ②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②항에 따라 적격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가액 중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해야 한다. 현물출자법인이 손

31) 2016 1월 1일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첫째, 현물출자법인이 당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둘째,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때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현물출자 이후에 피출자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도 계속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③항에 의거 폐업 등으로 인해 과세특례 중단 사유가 발생시 일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과세특례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 사업 계속성 중단사유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년 이내 폐지시 둘째, 지분의 연속성 중단 사유로 현물출자법인이 당해 주식 총수의 50%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 ③ 현물출자 최근 사례

SK텔레콤은 최근 홍콩 소재 계열사 SK차이나(SK China Company Limited)에 한화 5,390억원을 출자했다. 해당 출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계열사 SKY Property Management Limited의 전체 주식 1만 2638주와 다른 계열사인 SK Industrial Development China의 전체 주식 7,295만2,360주를 현물출자하고, 약 1,112억원을 현금 출자함으로써 SK China Company Limited가 발행하게 된 신주 1,020만 8,921주를 취득하는 방식이었다. 신주 취득금액은 SK텔레콤 자기자본의 3.34%에 해당되며, 현물출자 후에 SK China Company Limited에 대한 SK텔레콤의 지분율은 27.27% 되었다. 본 현물출자를 통해 SK텔레콤은 중국 내 사업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시장 지배력 강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가져왔다.

## 4. 구조조정(restructuring)시 과세체계 요약

### 1) 적격 조직개편의 요건 정리표

앞서 언급한 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에 과세이연을 적용하고자 할때 검토할 적격요건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sup>32)</sup>

적격요건 구분	합병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현물출자
√ 사업의 목적성	합병등기일 당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인간 합병일 것	분할등기일 당시 5년, 단 분할합병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할 것	현물출자일 당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출자(단) 공동출자자가 현물출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닐것
√ 지분의 연속성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총합병대가의 80%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할 것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총 분할대가의 100%을 주식으로 보유할 것, (단)분할합병은 80%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할 것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총주식의 80%이상 보유할 것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총주식을 보유할 것	
또한, 받은 전체 주식의 50%이상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혹은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은 각각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혹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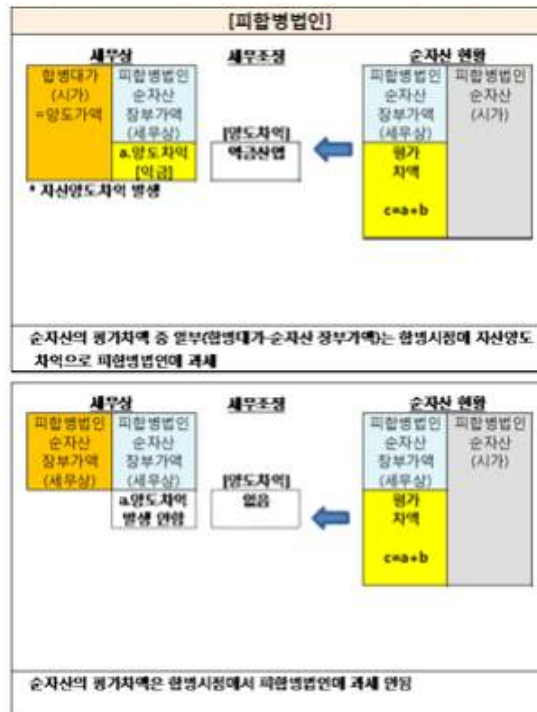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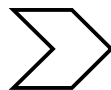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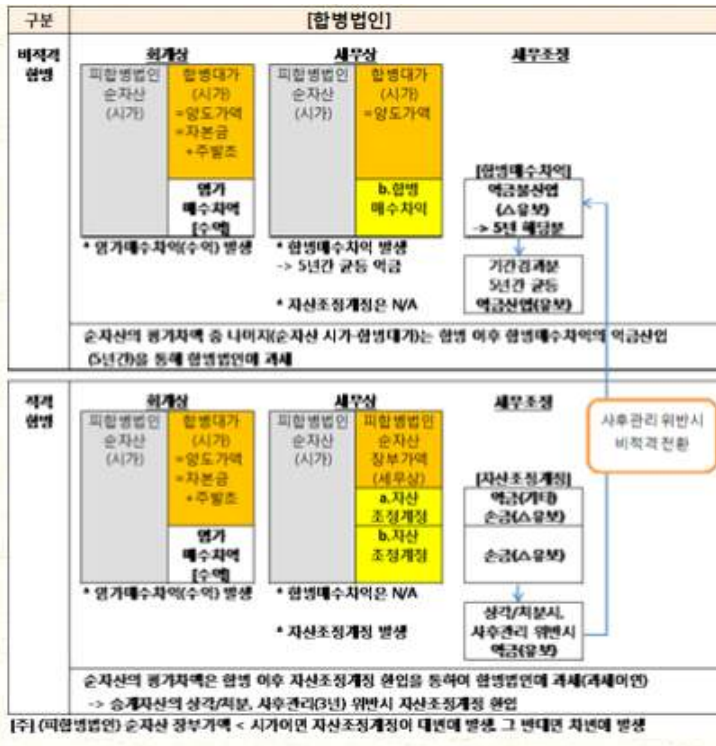
## 2)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비교표<sup>33)</sup>

① 순자산 장부가액 < 합병대가 또는 양도가액 < 순자산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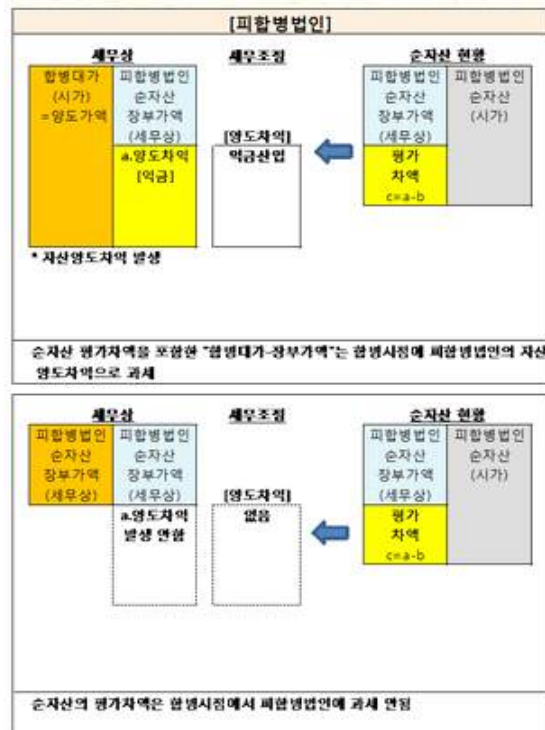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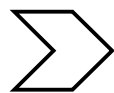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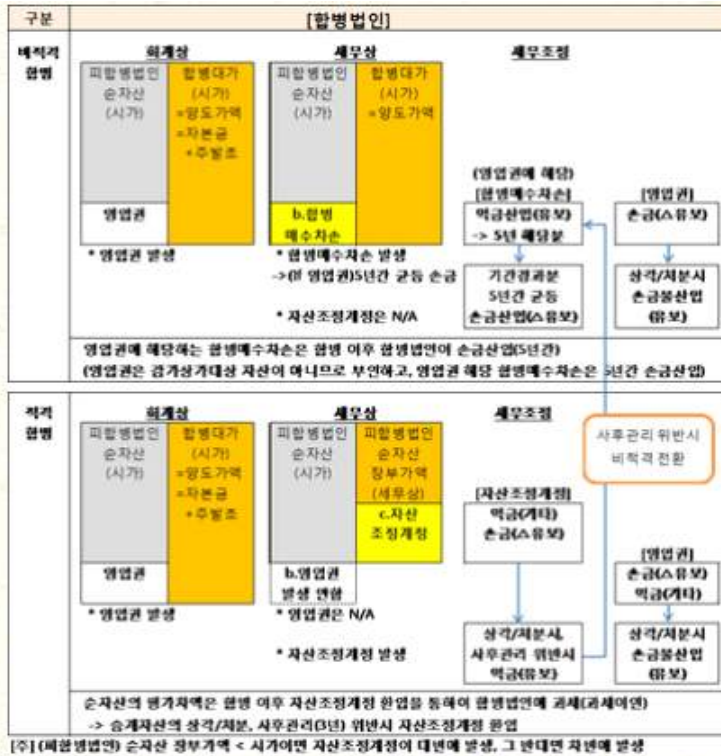
32) 2017 강경태 세법개론 참조

33) <http://blog.naver.com/taxist> 참조





② 순자산 장부가액 < 순자산 시가 < 합병대가 또는 양도가액



### 5.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관한 그 밖에 세무처리

## 1) 기타 세무조정 및 승계사항

적격합병 및 분할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된다. 비적격합병 및 분할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며 그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미승계한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모두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각각 소멸하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 및 합병 혹은 분할과 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은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이월공제가가능한 세액공제 중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경우 각 규정에 의거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공제가가능하다.

## 2) 자산의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sup>34)</sup>

법인세법 제50조 제①항 및 ②항에 의거 국내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과세특례요건을 만족하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에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을 통해 손금에 산입가능하다. 과세특례요건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 부동산임대업·중개업·매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교환할 것 둘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국내법인이 2년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을 교환할 것 셋째, 국내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사업에 계속 사용할 것이 이에 해당한다.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일시상각충당금은 교환양도자산의 처분이익과 교환양도자산평가이익 중 작은 금액이며 교환양도자산 처분이익은 교환취득자산가액에서 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지급액을 차감

34) Big Deal 통해 종전 사업부문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될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 것이고 교환양도자산 평가이익은 교환양도자산의 시간에서 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 제4장 미국 기업 인수합병와 세계

### I. 개요

#### 1. 미국 인수합병 시장의 특징 및 현황

미국은 인수합병의 발상지이며, 세계의 인수합병 흐름을 선도하는 시장이고 역사도 100년을 자랑하고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미국 인수합병 시장의 특징을 6차례에 걸친 Wave(물결)로 나타냈다. 6 types of waves는 기업 성장전략의 특징을 각 시대별로 잘 설명한다.

19세기 말에 시작한 1차 인수합병 물결은 미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대륙 횡단 철도 및 도로 등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구축되었고, 이를 통해서 각 산업분야에서 수평적 인수합병(Horizontal merger)이 이루어지는 반면 과도한 Monopoly Market(독점시장)이 형성되었다.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자 미국 정부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였다.<sup>35)</sup> 1920년대 2차 물결(wave)는 대중매체(Mass media)와 자동차 발달로 전국적인 광고 및 유통이 가능해졌으며, 기업들은 유통채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직적 통합을 목적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conglomerate(재벌기업)들이 등장

35) 관점에서 취하는 정책을 독점금지 또는 독점규제정책이라고 하며, 독점금지법은 독점금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독점금지법의 선구적 예는 미국의 '서먼법(1890)'인데, 이 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트러스트 기타 모든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를 위법으로 하였고, 독점을 하거나 독점을 위한 결합 또는 공모도 금지하였다. 서먼법의 제정으로 석유·담배 등의 트러스트가 해산되기는 했으나 기업활동·지주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독점을 방지할 수 없어, 다시 '클레이튼법(1914)'을 제정하여 차별가격, 배타조건부 거래, 지주회사 조직에 의한 실질적 기업활동, 임원겸임 등을 금지하여 서먼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각종 교묘한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같은 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위법행위로 금지하는 등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규제기관도 강화하였다.(Empas 백과사전 재정경제 일반 항목)

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경제가 Oligopoly market(과점상태)<sup>36)</sup>로 빠져들게 되었다.

1960년대 말인 3차 M&A 물결은 미국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피하기 위해 시작했다. 사업다각화의 정의는 한 기업이 한 가지 사업에만 집중하여 투자 및 전념하기보다 주력 사업 이외의 다양한 사업 분야로 사업 범위를 확장시키는 Business Strategy을 의미한다. 사업다각화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기업의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Product line-up을 확장하는 ‘Related diversification(관련다각화)’, 그리고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Unrelated diversification(비관련 다각화)’이다.<sup>37)</sup> Related diversification의 성공 사례로는 아마존(Amazon)이 책 이외에 음반, 비디오, 의류, 식료품, 보석, 의약품 등 다양한 물품 판매로 사업을 확장한 것을 비롯, 전자책 리더 Kindle의 제작 및 판매, 금융업에도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다. 더불어 Apple의 모바일 앱을 통한 음악 사업 및 스마트폰 사업 진출 역시 매우 성공적인 사업다각화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Excessive Diversification로 인해 기업들은 핵심 사업을 집중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전체가치가 하락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이건희 회장의 개인적 취향을 이유로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다가 손실을 크게 입고 해당 사업분야에서 철수한 예가 있다.

### 적대적 구조조정<sup>38)</sup>(Hostile merger)의 시기인 1980년대에는 금융

36) 거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형태로 오늘날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산업에서는 ① 소수의 거대기업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② 이들 대기업은 서로 가격인하경쟁 등으로는 경쟁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나 기타 각종 협정으로 공존(共存)을 피하고 있으며, ③ 한편으로는,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④ 이 경쟁은 서로 자사(自社)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을 고려하면서 행해진다. 이와 같은 시장형태가 과점이며, 과점이 일반화된 경제를 과점경제라 한다. 과점경제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극심해지며, 가격수준은 과점기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하락 요인이 있어도 값을 내리려 하지 않고[이것을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라고 한다], 반대로 임금상승과 함께 가격인상이 이루어져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되기 쉽다.

37) 관련다각화의 예를 들면, 펩시코가 콜라 위주의 상품에서 탈피, 다양한 음료수 제품군을 내놓으며 종합 음료 기업으로 변모한 것을 들 수 있다. 비관련 다각화의 예를 들면, 두산이 과거에는 소비재 중심의 기업이었으나 사업다각화를 통해 두산중공업 등의 성공적인 계열사를 만들어 중공업 중심의 사업체로 거듭난 것을 들 수 있다

38)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은 제3자가 대주주의 의사에 반해 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것으로 "기업사냥"이라 불리기도 한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시도되면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극적인 방어행위로 나올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적대적 인수합병이 성공하면 대상회사의 대주주나 현 경영진은 그 지위를 잃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기존의 일반 주주나 회사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통해 회사나 일반

분야에서의 각종 기법 등의 혁신과 함께 다양한 구조의 인수합병이 시도되었고, 기관투자자들의 성장, 주주권 강화, 효율화된 자본시장이 구축되었다. 5차 인수합병 wave은 20세기말 산업의 발전, 특히 각국의 금융, 통신, 전자 산업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로 인해 Cross boarder 인수합병이 급증하는 시기였다. 2003년 이후에는 국내 기업들의 유동성 과잉으로 사업을 통합하기 시작했고, 사모펀드의 역할이 강화되어 인수합병의 큰 손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인수합병 전용 사모펀드는 경영권 확보를 포함한 인수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만든 fund를 말한다. 2001년 3월 인수합병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sup>39)</sup> 설립허용과 인수합병 사모펀드 PEF의 의결권제한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Hostile merger가 가능한 인수합병 사모펀드(PEF)가 가능해졌다.<sup>40)</sup>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그 여파로 인수합병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구조조정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특히 유가, 환율, 금리 예측의 변동성으로 경기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 및 경영진들이 인수합병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수합병 협상과정에선 판매자가 기업을 인수 하겠다는 구매자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구매자 쪽이 우위에 있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이 매물로 나온 반면, 유동성이 충분한 구매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로 현금 유동성(cash liquidity)이 부족해진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 확보하고자 개인투자자

---

이익이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미국은 S&P 500 대 기업의 94%가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고 있다. 상장기업의 60%는 적대세력이 지분을 늘리기 어렵게 만드는 포이즌 필을 정관에 담고 있다. 미국의 '엑스 플로리오법'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금지한다

39) A private equity fund i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sed for making investments in various equity (and to a lesser extent debt) securities according to one of the investment strategies associated with private equity.

40) 최초 펀드 설정 때 투자자수는 50인 미만으로 한정됐으며 이후 주식식 장외 양도등을 통해 펀드내 투자자수를 늘릴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투자자수가 100명을 넘을수 없다. 그리고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 및권부사채)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을 때 인수합병 목적인지, 단순투자 목적인지 여부와 해당 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경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인수합병 목적이라면 취득일(CB는 전환일, BW는 행사일)로부터 6개월동안 매각을 못하게 되며, 단순투자 목적이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매각할 수 있다. 또 5%를 초과해 1%씩 추가 매입(매각)할 때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private investor)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 보다 우선주로 대가를 지불하는 `상장기업집중투자'(PIPE)<sup>41)</sup>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합병 후 확실한 Synergy 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전준비와 실사를 통해 M&A가 이루어졌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이 되던 인수 합병 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 Asia 기업들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 2. 미국 인수합병 투자관련 법조항

인수합병가 가장 활성화 된 미국의 경우 해외기업이 미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nti-trust laws, State corporate laws 3가지는 아래와 같다.

### 1)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934 Act는 미국 증권거래법의 뿌리가 되는 법률로서, 1933 Act가 증권발행을 규제토록 하는데 반해, 1934 Act는 증권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매매보증금을 부과하고 증권업자의 부채비율(debt ratio, 자기자본에서 타인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및 차입선을 한정함. 둘째, 증권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세조작행위나 사기적인 수단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이를 금지함. 셋째, 일반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위해 상장법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하고 임원 등 내부관계자의 주식보유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이러한 규제 조치들은 처음에는 상장증권에만 적용되었으나 1968년 이후에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등록의무를 부과하였다.

---

41) A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often called a PIPE deal, involves the selling of publicly traded common shares or some form of preferred stock or convertible security to private investors. It is an allocation of shares in a public company not through a public offering in a stock exchange.

## 2) Anti-trust laws

미국기업의 시장에서 불공정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법률로, 독점금지법이라고 한다. 1980년 제정된 Sherman Antitrust Act of 1980, Clayton Act of 1914,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 3개 법령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경쟁의 Magna Carta<sup>42)</sup>로 불리는 Sherman Antitrust Act는 국내 및 국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산주체 간의 결합은 형태 불문 불법이며, 미국 내에서 해당 기업간의 거래, 통상에 대한 독점이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2가지 핵심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1936년 Robinson-Patman Act은 가격 등 각종 수단으로 소비자를 차별하고 가격경쟁을 포함해서 각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M&A 혹은 회사들 간에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 3) State corporate laws

미국은 각 주마다 상이한 기업법이 존재하므로, 인수합병에서 State corporate laws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Foreign corporations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해당 주에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corporate long-arm statute(Corp. Code sec. 2115)의해 회사내부 경영(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 해당 주법에 따라야 한다. <sup>43)</sup>특히, 많은 State에서 해당 State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막을 수 있는 적대적인수방지법을 정한 경우가 많다.

## II. 미국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인수합병)세제

### 1. 개요

미국 구조조정 세제에서는 타 법인을 인수하거나 법인의 일부 또는

42) 1215 제정된 영국의 대헌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

43) Internal Affairs Doctrine: 회사의 내부경영은 회사설립주법(the law of the incorporating state)에 따른다.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이를 과세 대상 거래로 보아 실현된 전체 손익 금액을 인식한다. 단, Statutory requirements(법적 요건)와 Judicial requirements(사법상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sup>44)</sup>을 적용하다. 이렇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기업의 조직재편을 Tax-free reorganization(비과세 조직재편)이라고 한다. reorganization 과정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대신에 종전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재편 이후 자산 혹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해당 자산을 Depreciation(감가상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추징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세법과 큰 틀이 비슷하다. 하지만 미국 연방세법<sup>45)</sup>에서는 비과세 조직재편 거래를 구분하여 이연되는 세금과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reorganization 인지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세법보다 보다 정밀하고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소득세법에서는 아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직재편에 조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연방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상시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법상 합병("A" reorganization), 주식교환("B" reorganization), 자산인수("C" reorganization), 분할("D" reorganization), 자본재구성("E" reorganization), 조직변경("F" reorganization), 기업개선작업("G" reorganization)이다. A, B, C, D, F형은 조직변경 및 사업조정으로, E형은 재무구조개선 목적<sup>46)</sup>에 해당한다. 회사법상 합병("A" reorganization), 주식교환("B" reorganization), 자산인수("C" reorganization)는 기업결합<sup>47)</sup>에 해당한다. A타입은 협의의 합병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상법상의 절차를 따르는 회사법상 합병을 말한다. B타입과 C타입은 광의의 합병으로 주식취득, 영업양수를 이용한 종속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기업결합을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D형부터 G형까지 규정함으로써 미국세법 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reorganization은 우리나라 세법보다 넓은 범위

44) target corporation( 양도법인) 자산의 장부가액(basis)을 승계하여 관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양수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것.

45) Internal Revenue Code("IRC") 368

46) 조직재편 전 법인의 틀을 유지하여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7)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 법인기업이나 법인격 없는 기업과 합해 하나의 회계실체가 되는 것

이며, 기존 기업이 변경된 회사 형태로 계속 된다는 전제로 구분하는 것이다.

일곱가지 reorganization 유형에 대해 취득형과 분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취득형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를 가리키는데 회사법상 합병("A" reorganization), 주식교환("B" reorganization), 자산인수("C" reorganization), 분할("D" reorganization), 기업개선작업("G" reorganization)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D타입과 G타입은 취득형 또는 분할형으로도 분류가능하다. 분할형이란 피합병법인의 자산 일부가 피합병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에게 넘어가므로 해당 회사 주식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분배된다. 피합병법인은 조직재편 이후 존속할 수도 청산할 수도 있는데 존속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두 개 법인 간에 배분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E타입과 F형은 취득형 또는 분할형에도 속하지 않는데, 조직재편 시 자산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고 자산의 일부를 합병법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모든 reorganization이 위 일곱가지 유형에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유형에 충족될 수 있어 미국세법에는 일반적으로 더 가까운 유형인지에 따라 타입을 정의한다. 물론 어느 하나의 비과세 조직재편에 해당하더라도 미국 국세청이 해당 조직재편을 과세 조직재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eorganization의 목적이 business purpose을 충족하는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4) 미국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세제

구분	Types of Reorganizations
조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법상 합병("A" reorganization)</li> <li>· 주식교환("B" reorganization)</li> <li>· 자산인수("C" reorganization)</li> <li>· 분할("D" reorganization)</li> <li>· 조직변경("F" reorganization)</li> </ul>
사업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개선작업("G" reorganization)</li> </ul>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재구성("E" reorganization)</li> </ul>

2. 비과세 조직재편의 세금효과 요약

비과세 조직재편(§368)과 관련 당사자에 대한 세금 효과는 거의 동종자산교환(§1031)에 대한 세금효과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동종자산교환 비과세 규정의 경우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은 투자자가 한 회사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과 교환을 하는 경우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거래가 비과세 조직재편(§368)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종자산 교환과 유사한 비과세 거래로 인정받게 된다.

(1) Realized Gain/Loss	(2) Recognized Gain (Not Loss)	(3) Postponed Gain/Loss	(4) Basis of New Asset
Amount realized - Basis of asset(s) surrendered	Lesser of boot Received or gain realized	(1) - (2)	FMV of asset (stock) received - Postponed gain (3) + Postponed loss (3)
Realized gain/loss	Recognized gain	Postponed gain/loss	Basis in new asset(stock)

1) Gain or Loss

비과세 조직재편(§368)에 해당되는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직재편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다른 자산, 즉 boot를 지급한 경우 이

익은 인식하나 손실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boot가 이익으로 인식되면 주주의 배분된 E&P까지는 배당금으로 E&P초과한 금액은 보통 capital gain으로 인식한다.

## 2) Basis

목표회사로부터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자산은 합병일 현재 장부가액이 즉 carryover basis로 평가된다. 합병법인의 carryover basis는 목표법인 인식한 합병과 관련한 이익만큼 증가한다.

<b>Target's basis in property transferred</b>	<b>\$xx,xxx</b>
Plus: Gain recognized by Target on the transaction	xxx
<b>Equals: Basis of property to Acquiring corporation</b>	<b>\$xx,xxx</b>

그림 17)Basis to Acquiring Corporation of Property Receive

## 3. 비과세 조직재편(Tax-free reorganization)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곱 가지 재편이 조직변경목적, 사업조정목적,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 일곱 가지 유형은 미국 세법 section 368(a)(1) tax-free reorganization 유형을 따라서 분류하였다.

### 1) 조직변경목적의 비과세 조직재편 유형

#### 가. 회사법상 합병("A" reorganization)

미국 연방세법에는 1918년에 규정되었으며, mergers(흡수합병), consolidation(신설합병), triangular(삼각합병), reverse triangular(역삼각합병) 등이 해당한다.

① mergers(흡수합병)과 consolidation(흡수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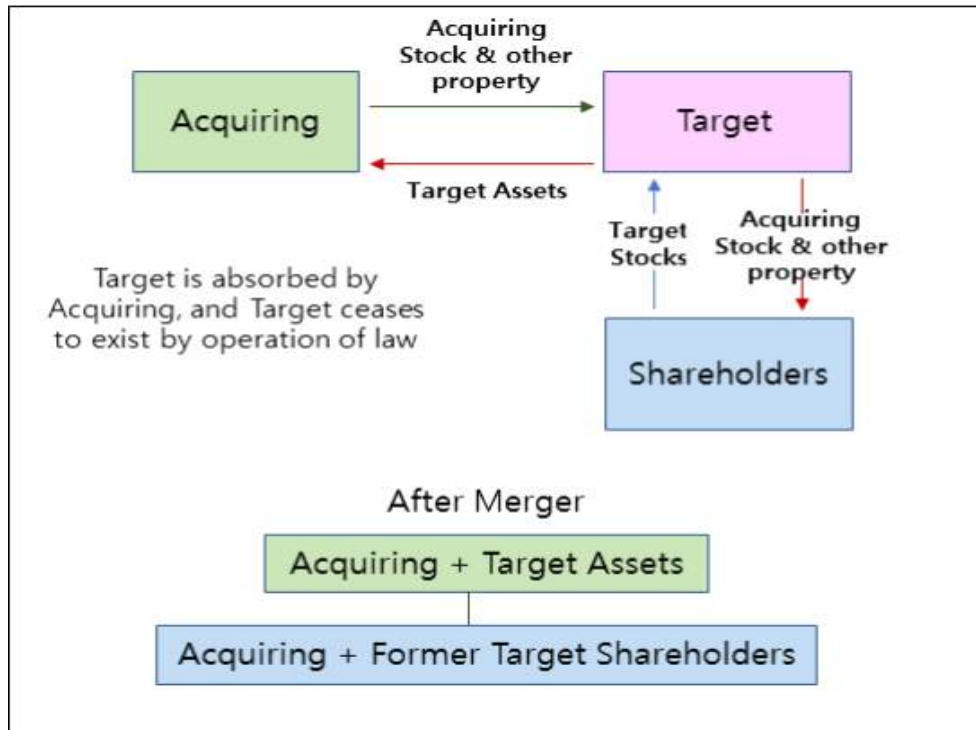


그림 18) Merger Trans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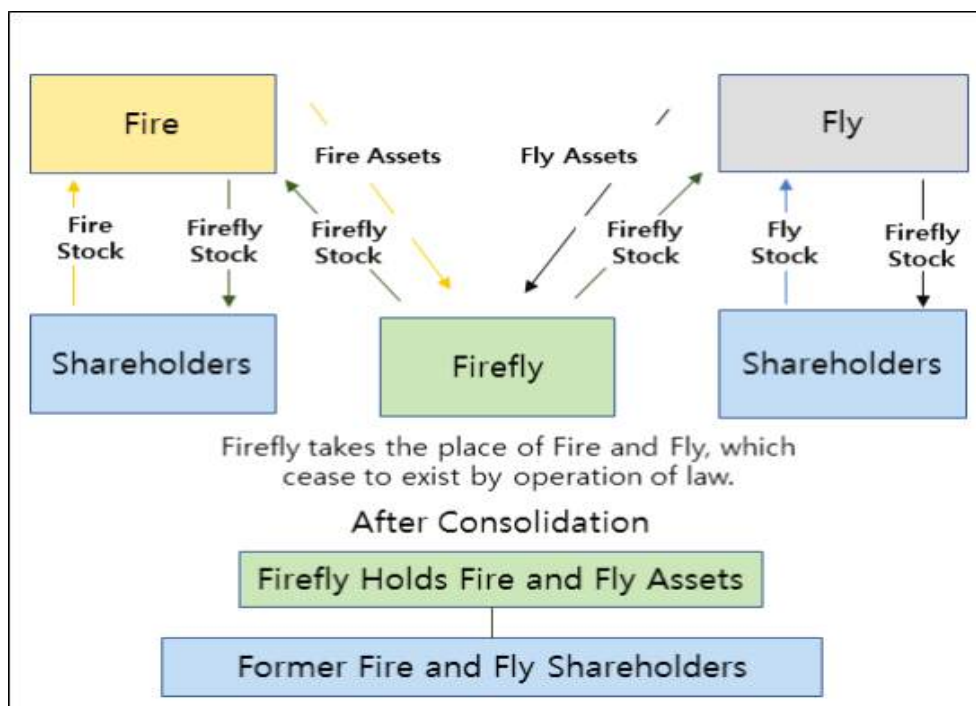


그림 19) Consolidation Transaction

mergers(흡수합병)의 경우 일반적인 합병병식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합병대가(stock, security, boot 등)를 지불하고 피합병법인을 인수하고 피합병법인은 소멸한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합병법인의 주식 등과 교환해서 피합병법인을 청산시키고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는 방법도 흡수합병에 해당한다. consolidation(신설합병)은 신설합병법인이 합병대가(stock, security, boot 등)를 지불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게 되는데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은 청산하게 된다.

② Triangular mergers vs. Reverse triangular merg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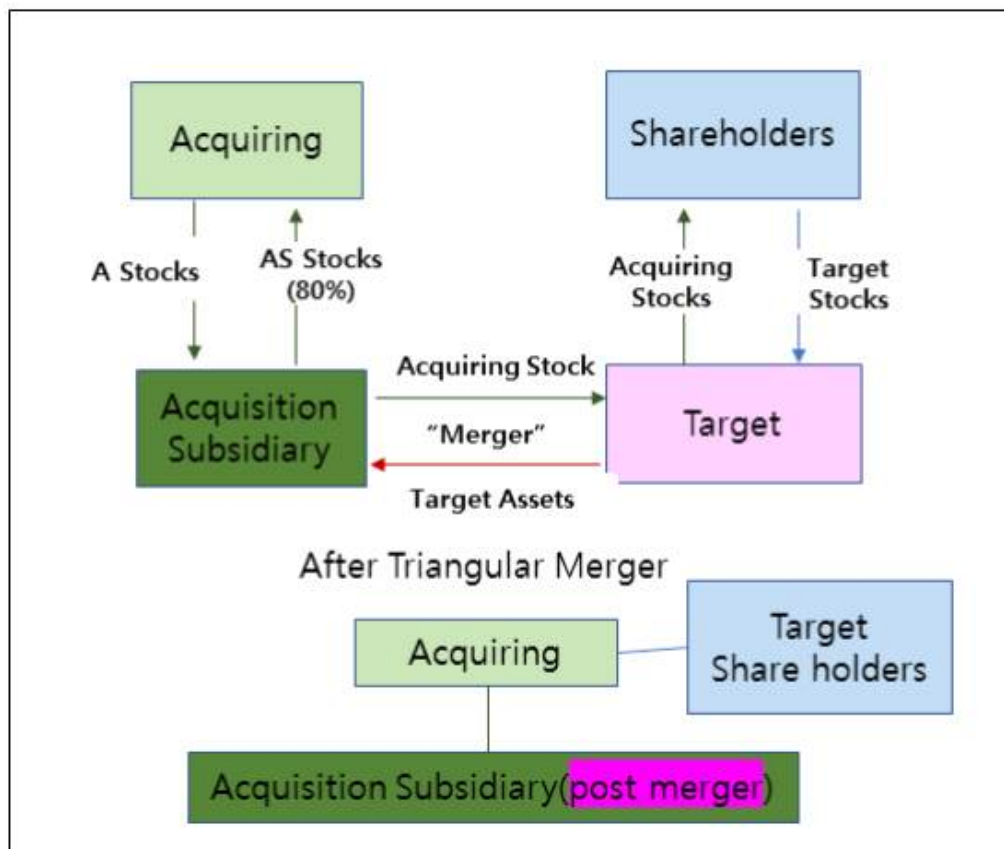


그림 20) Triangualr Mergers(합병후 자회사는 목표법인 자산부채를 승계함)

Triangular mergers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승계받고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흡수합병과 유사하나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한다는데서 차이가 있다. Reverse triangular mergers는 자회사인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에게 흡수되어 결국 피합병법인이 합병회사의 모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Triangular mergers가 피합병회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고 Reverse triangular mergers는 피합병회사가 법인 실체를 유지하므로 목표법인이 사업상 이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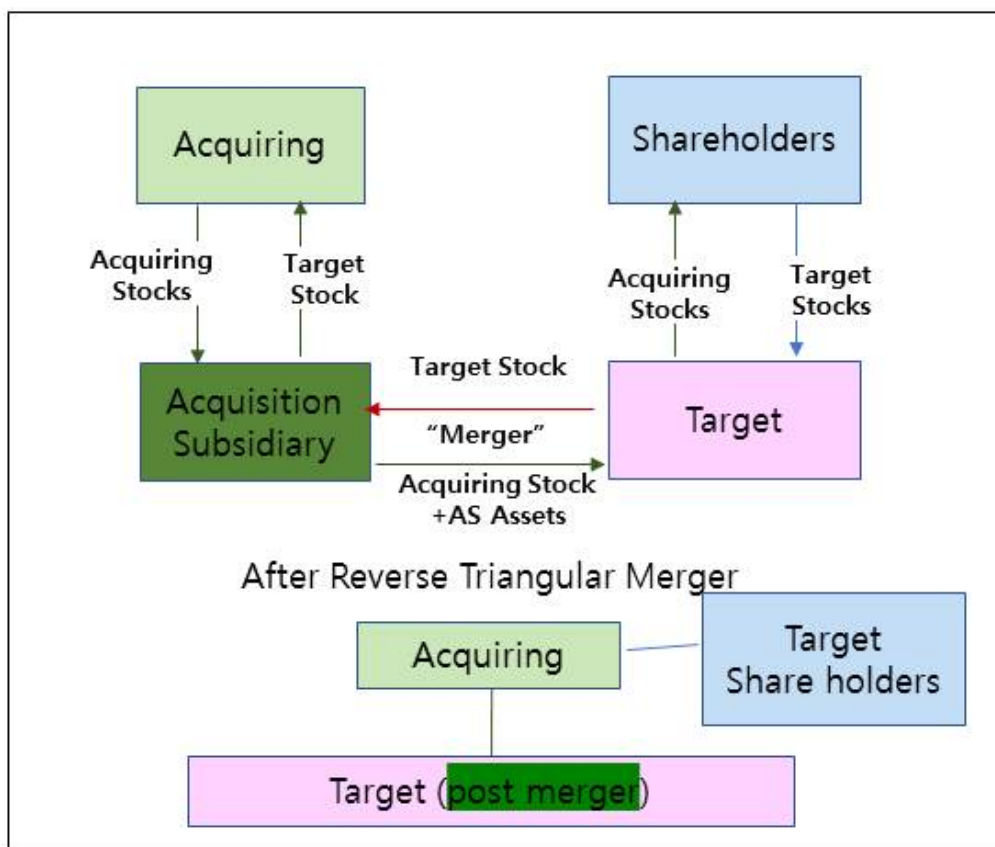


그림 21) Reverse Triangular Mergers(합병 후 목표법인은 합병법인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나. 주식교환("B" re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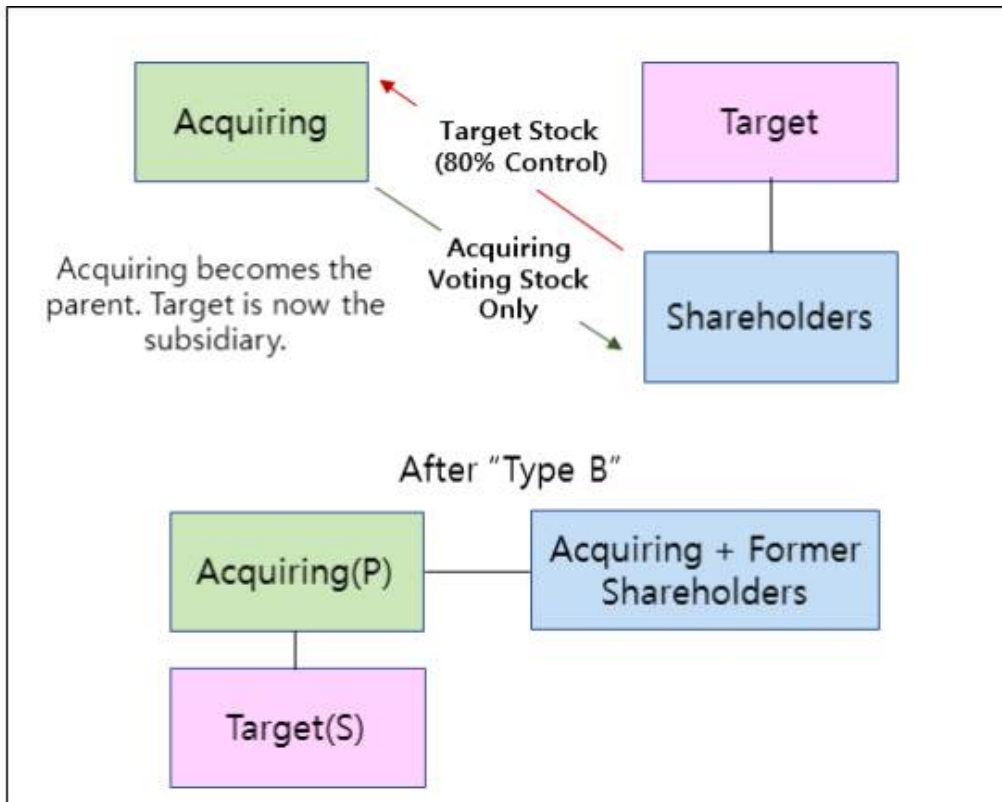


그림 22) "Type B" Reorganization

"B" reorganization은 stock for stock transfer(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목표법인(T)의 주주는 소유주식을 양수법인(A)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교환한 후 목표법인(T)는 양수법인(A)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이다. 본 기업조직재편으로 목표법인(T)의 자산 및 부채 장부가액과 세무조정사항은 변하지 않으며 구조조정후에 자회사가 된 목표법인(T)와 모회사가 된 양수법인(A)는 consolidated tax return(연결세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주식교환이후 목표법인(T)가 소멸하면 자산과 주식의 교환거래로 보아 "C" reorganization으로 간주한다. 또한 Triangular type B reorganization의 경우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이 피합병법인의 지배력 있는 의결권 주식과 교환되고 B reorganization과 같이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의 자회사로 존속하게 된다.



다) 자산인수("C" re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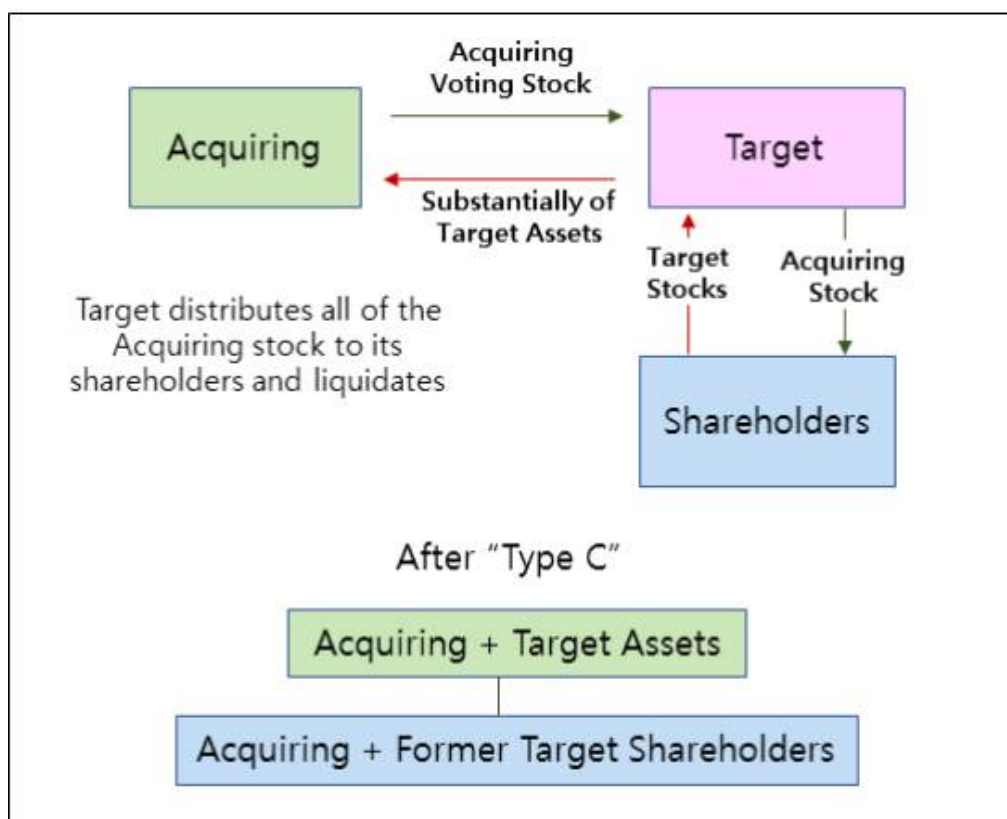


그림 23) "Type C" Transaction

"C" reorganization은 asset for stock acquisition(자산인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합병법인인 양수법인(A)는 의결권있는 주식 및 기타대가를 지불하고 피합병법인인 목표법인(T)의 실질적인 자산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목표법인(T)는 해당 거래에서 취득한 A의 주식, 유가증권 그리고 기타 자산 등을 모두 T법인 주주에게 승계해야한다. 실무상 보통 목표법인(T)는 해산하나 주에 따라서 법인 실체를 유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C" reorganization은 형식상 해산을 요구하지 않기에 경제적으로 mergers와 동일하게 목표법인의 자산 취득 등이 일어나므로 실질적으로는 mergers로 볼 수 있다.

라) 분할("D" reorganization)

D reorganization은 분할형 조직개편이라고 하는데 분할법인이 자산을 타 법인(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분할법인과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을 지배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주로 business adjustments을 하기위해 이루어지는데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두 사업간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분할, 독과점금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 reorganization의 형태는 Spin-off, Split-off, Split-up으로 구분한다.

① Spin-off(분리설립)->주식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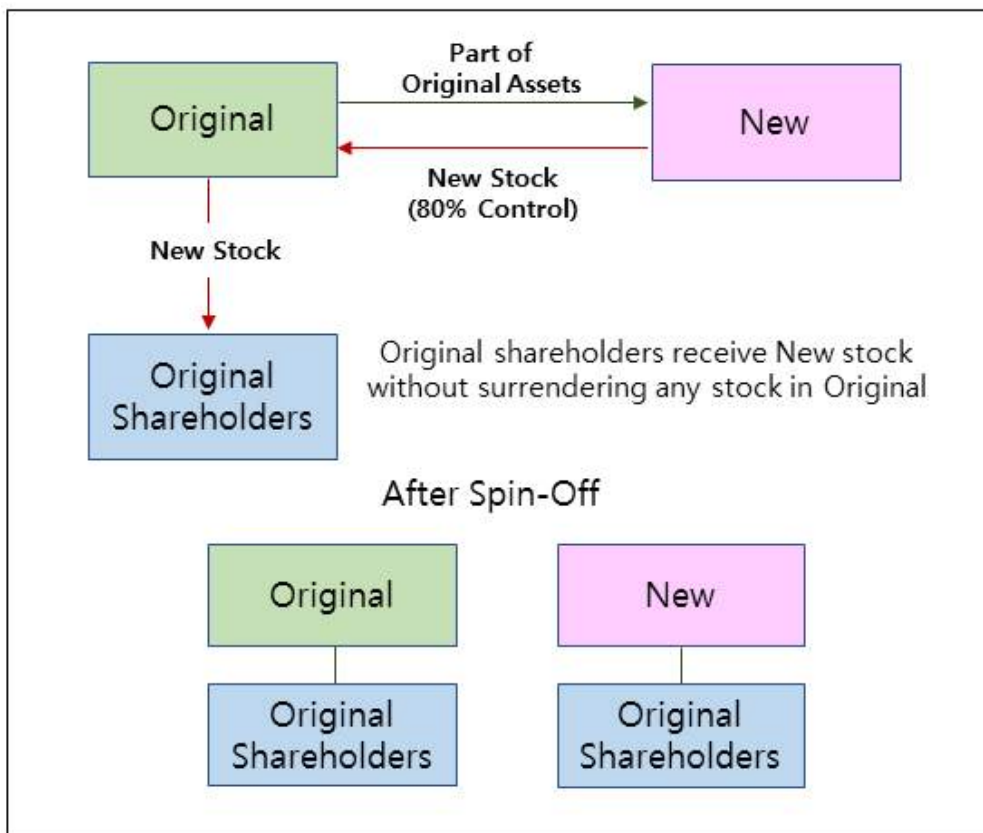


그림 24) D reorganization-> Spin-off

분할법인(D)가 해당 자산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A)에 이전하고 분할대가로 A의 주식, 현금, boot property(기타 대가)을 지급한다.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받고 분할법인의 주식을 반환한다. 주로 한 회사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Spin-off가 이루어진다. 분할설립기업의 주주구성은 분할기업의 주주구성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신규로 자회사를 만들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주식을 배당하므로 주주의 동일성을 존속해서 두 개의 회사가 분리되므로 배당형 기업분할이라고 불리는데 두 개의 기업이 하나가 되는 합병과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② Split-off(분할설립)->주식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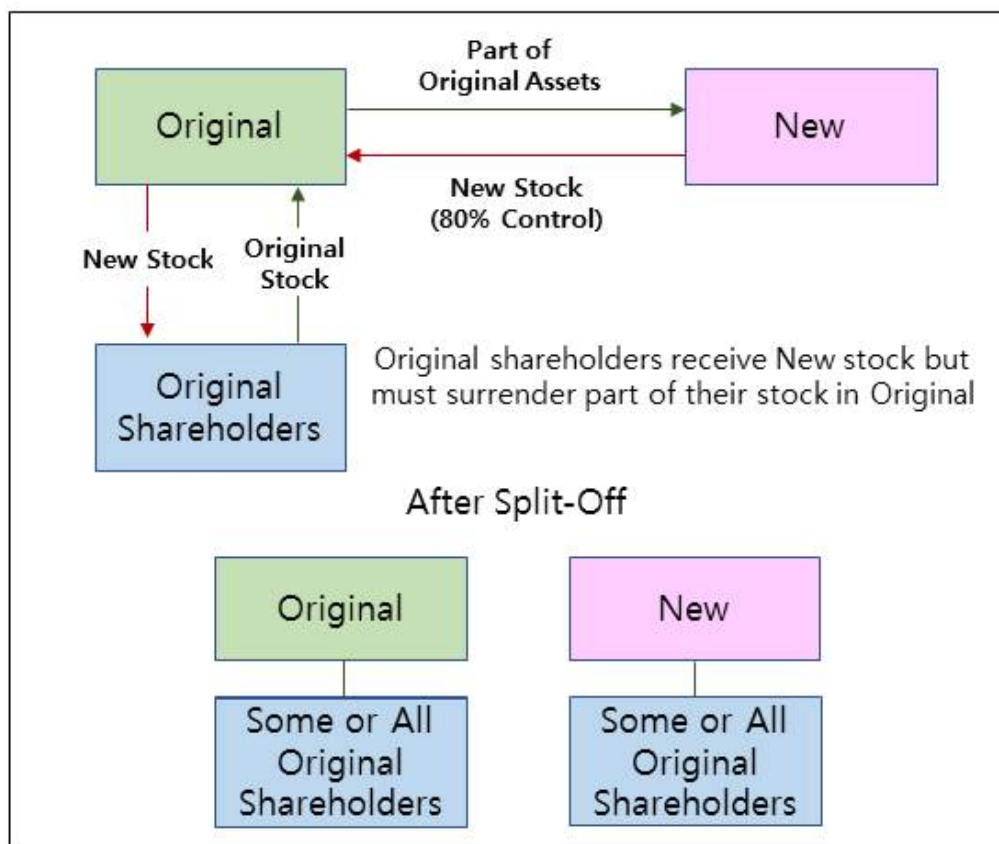


그림 25) D reorganization-> Split-off

분할법인(D)가 자산을 분할신설법인(A)에게 이전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A)의 주식, 유가증권, 현금, boot(기타대가)를 수취한다. 분할법인(D)는 분할신설법인(A)의 주식을 받고 분할법인(D)의 주주에게 배분하며, 분할법인(D)의 주주는 분할신설법인(A)의 주식을 받고 분할법인(D)의 주식을 반환한다. 이는 분할신설법인 즉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갖기 원하는 분할법인 즉 모회사의 기존주주에게만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분할법인의 기존주주는 분할법인(A)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와 분할신설법인(A)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로 나뉘지며 분할법인(A)의 사업을 분할하게 된다. 이를 일컬어 주식상환형 분할이라고도 한다. Split-off가 Spin-off와의 차이점은 Split-off는 분할법인으로부터 분리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이 분할법인과 동일하나 Spin-off는 분할법인으로부터 분리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기존 분할법인 주주의 일부로 구성되어 주주구성이 변한다는 것이다. 또한 Split-off는 분할법인으로부터 현금유입이 나타나는 반면 Spin-off는 분할법인으로부터 현금유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주주 중에서 일부가 본인이 보유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교환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을 취득함으로써 역시너지를 제거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오고 적대적 M&A로부터 중요한 공격목표가 된 사업부문을 Spin-off를 통해 방어할 수 있다.

### ③ Split-up(소멸분할)

분할법인(D)가 그 자산을 두 개의 분할신설법인인 자회사A1와 자회사A2에게 이전하고 분할대가로 각각의 주식, 유가증권 또는 현금, 기타 boot을 지급받는 거래를 말한다. 분할법인(D)의 일부 자산을 자회사 A1과 자회사 A2에 각각 양도하고 분할대가로 받은 자회사 A1의 주식과 자회사 A2의 주식을 분할법인(D)의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한다. 즉 분할법인(D)의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분리해서 둘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D)는 해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멸분할 또는 완전분할이라고도 불리며 특정사업부문을 전문화하는 반면 부진한 사업부문을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리해서 분리하므로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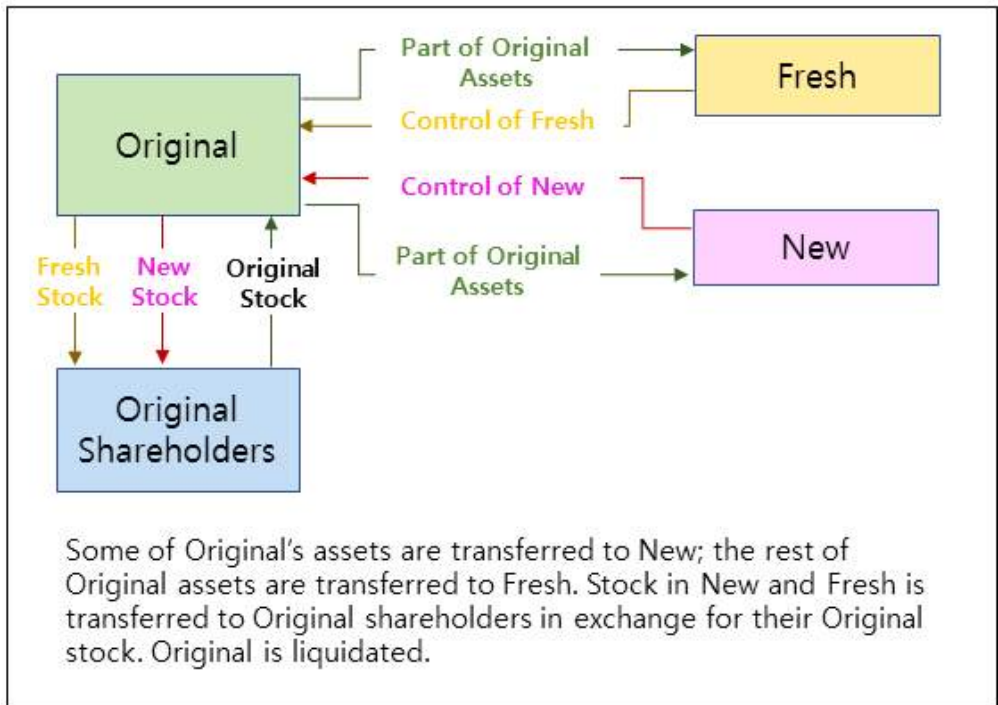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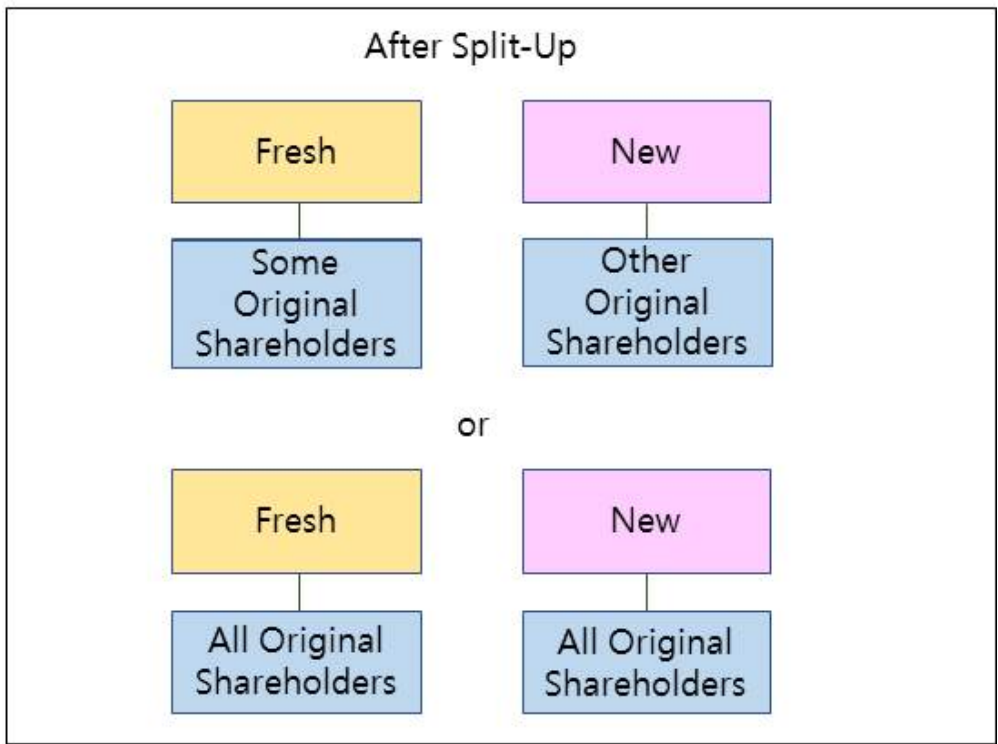


그림 26) D reorganization → Split-up



마) 조직변경("F" re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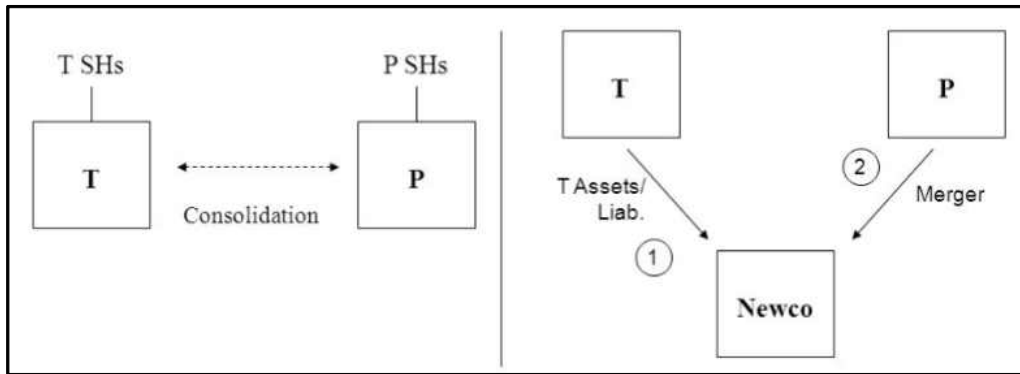


그림 28 ) F reorganization

F reorganization은 change of corporate identity, form or place of organization을 일컫는데, 단순화하지만 영향력 있는 변경을 의미한다. 원래 F reorganization은 기존 법인 및 기존 법인 주주가 이익 및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조직변경이나 법인명을 바꾸는데 이용되었다. 결국 F reorganization에서는 기존 법인(P)의 자산과 부채는 신규 법인(Newco)의 자산과 부채가 된다. 기존 법인(P)의 주주 혹은 채권자는 신규 법인(Newco)에서 동일하게 주식 및 채권을 가지게 된다.

2) 사업조정목적의 비과세 조직재편 유형

가) 기업개선작업("G" reorganization)

G reorganization은 bankruptcy reorganization으로서 비과세되는 파산구조조정을 의미하는데 파산법에 따라서 법원의 동의를 통해 해당 법인의 자산을 타 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기업인 부채기업은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받은 양수법인의 주식과 유가증권을 부채기업의 주주, 주식소유자와 채권자에게 배분한다. 부채기업은 양수법인과 별도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파산법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시

법원이 파산을 명령할 수 있다.

### 3) 기업 재무구조개선목적의 비과세 조직개편 유형

#### 가) 자본재구성("E" reorganization)

E reorganization은 recapitalization이라고 불리는데 outstanding stock, securities or paid-in-capital의 character 및 amount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자본재구성은 주식을 주식과 교환하거나 주식과 부채를 교환하고 자본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 자본재구성이 발생하므로 기업에게 현금이나 자산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인 자산에는 변동이 없어 비과세 거래로 분류된다. E reorganization을 하는 이유는 debt to equity ratio(이자비용과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해다 해당 법인은 주식(보통주 혹은 우선주)을 추가로 발행해 기존 부채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를 낮출 수 있다. 또한 estate planning device에 따라 E reorganization이 이용되는데 가령, 부모 소유의 보통주 주식을 우선주 주식과 교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거래 이후에 보통주 주식은 자녀에게 이전되므로 자녀는 기업에 경영 지배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주식을 우선주 주식으로 교환한 부모는 우선주 현금배당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매년 얻게 된다. 우선주의 경우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통주를 소유한 자녀가 자본가치의 증가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본재구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증여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sup>48)</sup>에 E organization의 상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① stock-for-stock exchange (주식과 주식의 교환거래)

해당 기업 내에서 보통주와 보통주간의 주식교환, 우선주와 우선주간의 주식교환, 보통주와 우선주간의 주식교환이 구조조정에 따라 이

48) Secs. 2701-2704

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식교환으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주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새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이전 주식의 장부가액이 된다. 만약 해당 거래시 수취한 주식의 시장가치가 제공한 주식의 시장가치와 상이한 경우 그 거래 상황과 사실에 따라 두 시장가치의 차이를 배당, 증여, 자본불입, 상여 또는 채무변제로 과세한다.

② bond-for-stock exchange (채권과 주식의 교환거래)

해당 기업내에서 채권을 해당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기업이 채권이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과 교환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과세 적격거래로 분류된다. 만약 기업이 채권이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과 교환하게 되면 ordinary income으로 보아 주주에게 과세한다.

③ bond-for-bond exchange (채권과 채권의 교환거래)

해당 기업내에서 어느 채권과 다른 채권간의 교환을 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양수한 채권의 face value가 양도한 face value와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만 비과세 적격거래로 분류된다. 만약 양수한 채권의 장부가액이 양도한 장부가액을 초과한다면 차액의 공정가치를 Boot(주식 이외의 대가)로 간주하여 채권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 3. 비과세 조직재편의 실정법상 요건과 사법상 요건

#### 1) 실정법상 요건(statutory requirements)

① A reorganization 비과세 요건

State의 회사법 요건을 만족해야하는데 첫째, 지분연속성 요건에 따르면 합병대가의 형태는 불문한다. 그러나 미국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연방세법상 원칙은 지분의 계속성으로 전체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의 주식<sup>49)</sup>이 50%이 넘어야한다. 둘째, 청산요건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이 청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추가요건에 의하면 미국 특성상 합병거래는 연방세법 뿐만 아니라 주세법을 만족해야 하므로 관련 합병 절차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주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의 주주의 대다수가 합병에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거래를 통해 주식이 공개 거래되면 합병절차에 비용<sup>50)</sup>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는 해당 합병거래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주식을 개별적으로 평가받고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주주가 많아지면 해당 지분의 매각이 증가하므로 지분의 계속성 요건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 ② B reorganization 비과세 요건

첫째, 합병법인은 Target company의 주식을 합병법인의 voting stock(의결권주식)과 exchange을 해야만 한다. 단주 취득과 조직재편 관련 법률비용, 회계비용, 행정비용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 reorganization의 result는 target company가 양수법인의 자회사로 되어 모회사의 지배력을 받는 것이다. 합병법인은 target company의 voting stock의 80%와 non voting stock의 80%가져야 지배력을 획득하는데 소액주식이 20%까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C reorganization 비과세 요건

첫째, Substantially all 자산의 취득 요건에 대해서 연방소득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 Target company의 자산 중 총자산 시장가치 중 70% 및 순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도록 했다. 둘째, 합병법인은 합병대가로 오로지 voting stock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reorganization과

49) 주식, 비의결권 주식, 보통주, 우선주를 모두 포함한다.

50) 합병절차 진행시 승인획득비용, 대리인 요청비용, 주주총회개최 관련 비용 등이 있다.

정 중 합병법인이 target company의 의결권있는 주식 80%이상 취득했다면 기타 합병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target company 자산 중 20%에 대해 합병대가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 현금, 유가증권 또는 boot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채인수의 경우 인수부채가 target company 자산의 20%을 넘게 되면 비과세 조직재편이 되려면 합병대가로 오로지 의결권있는 주식을 지불해야 한다. 부채인수의 경우 조직재편시 다른 인수의 경우보다 현금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데 제한을 둔 것이다.

#### ④ D reorganization 비과세 요건

취득형 D reorganization의 경우에는 C reorganization의 비과세 요건과 유사한데 첫째, substantially all asset을 취득하고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situation에 의거 총자산 시장가치 중 70% 및 순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가 해당한다. 둘째, control requirements을 만족해야 하는데 조직재편 후 target company 및 그 주주는 양수법인을 지배해야 하고 이 때 지배력은 전체 의결권있는 주식 50%이상 혹은 주식 가치의 50% 이상을 말한다. 만약 어느 구조조정이 C reorganization과 D reorganization의 비과세 적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D reorganization으로 본다

분할형 D reorganization의 경우, 첫째,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으로 자산을 배분받아야 한다. 이때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중 80%이상 및 의결권없는 주식 80%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둘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거래 후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한다. 불필요한 spin-off거래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셋째, 분할법인은 분할거래 전 소유했던 분할신설법인 주식과 분할 수 지배력이 있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모두를 분할법인주주에게 승계해야한다. 넷째, 해당 reorganization은 substantial 사업목적으로 해야하며 주주 의견불일치로 사업이 분할되거나 소송의 결과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다섯

제, 사업재편 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는 사업재편 후에도 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하며 분할법인의 주주의 경우도 같다. 위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분할법인의 주주는 주식상환(split-off), 주식배당(spin-off), 분할법인 청산(split-up) 으로 과세한다.

## 2) 사법상 요건(judicial requirements)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의 요건만 만족하면 적격합병 및 분할로 분류되나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소득세법 이외에 복잡한 판례법 즉 사법상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조직재편으로 분류된다. 이는 연방소득세법은 형식적 기준에 해당하는 statutory requirements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조직재편이 비과세인지 조세회피 목적인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대법원은 아래 네 가지 judicial requirements 특 사법상 요건을 통해 비과세 조직재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판단하고 있다.

### ① Sound Business Purpose(사업 목적성)

비록 형식적 기준인 statutory requirements를 만족한 거래라고 해도 business purpose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과세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반드시 조세 회피를 넘어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해서 business purpose가 필연적으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

### ② continuity of interest(지분의 연속성)

비과세 조직재편 당시 합병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shareholder(주주)의 연속성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주주들이 조직변경 전 후 실질적으로 똑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조직변경은 비과세로 본다. 이를 위해 피합병법인 주주는 반드시 합병법인에서 주식(equity interest)을 받아야 한다. 또한 A형 조직재편의 경우 Target 회사의 기존 주주가 합병 대가 중 40%이상을 Acquiring 회사의 주식으로 취득할 것으로 필요로 하나 판례에서는 40% 보다 낮은 비율에서도

비과세 조직재편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즉, 필요조건은 합병법인이 지불한 합병대가의 전체 금액(aggregate consideration)에 적용하는 것으로 모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에 40%비율의 의미는 미국 국세청이 A형 조직재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최저 비율을 의미한다.

③ 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지분의 연속성)

조직변경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변경 후에도 목표법인의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즉, 조직변경 후 합병법인은 첫째 목표법인의 원래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historic business test) 둘째, 목표법인 사업 자산의 상당한(significant) 부분을 사용(asset use test)해야 한다. 상당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연속성 조건은 조직변경이 2개이상 회사가 참여할 때 필요하며 1개 회사만이 하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위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④ Step Transaction(단계거래)

단계거래 원칙은 납세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일련의 거래를 만드는 것으로 각 단계로 한정해 볼 경우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step transaction doctrine은 “C” Reorg와 acquisitive “D” Reorg에 적용된다. 이 경우 목표법인은 substantially 모든 자산을 합병법인에 넘겨야 한다. 따라서 목표법인이 원치 않는 자산을 조직변경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substantially all 조건에 맞지 않아 비과세 조직변경에 해당 되지 않는다.

표5) 조직변경형 조직재편

구분	매수대상 자산	매수대가	양도법인	주주의 이득	비과세 요건
"A" Reorg	·목표법인의 자산 및 부채	·양수법인의 의결권 주식 및 비의결권 주식,	·합병결과 청산함.	·실현된 이득과 주식 이외의 boot(매수대	·지분 연속성 요건 매수 대사 중 40% 이상이 주식이어야 함.

		유가증권, 기타자산		가) 중 더 적은 금액	
<b>"B" Reorg</b>	·목표법인의 의결권 주식의 80% 이상 및 비의결권 주식의 80% 이상	·양수법인의 의결권 주식	·양수법인의 자회사로 남음.	·없음	·주식 이외의 noncash boot(비현금성대가)가 있는 경우 해당 조직재편은 과세대상 거래임.
<b>"C" Reorg</b>	·실질적으로 목표법인의 모든 자산	·양수법인의 주식, 유가증권 및 기타자산(단, 매수대사의 80%이상이 의결권 주식이어야함)	·공식적으로 청산할 필요는 없으나, 실무상 보통 청산함. (조직재편 결과 취득한 주식, 유가증권 및 주식이외의 대가를 비록하여 목표법인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주주 및 채권자에게 배분해야함)	·실현된 이득과 주식 이외의 boot(매수대가) 중 더 적은 금액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의 취득 요건 (양수법인은 양도법인 총자산 공정시장가치의 70% 그리고 순자산 공정시장가치의 90%를 취득해야 함.)
<b>"D" Reorg</b>	·실질적으로 양도법인의 모든 자산을 양수법인이 취득	·양수법인의 주식, 유가증권 및 기타자산	·실무상 보통 청산함. (조직재편 결과 취득한 주식, 유가증권 및 주식이외의 대가를 비록하여 목표법인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주주 및 채권자에게 배분해야함)	·실현된 이득과 주식 이외의 boot(매수대가) 중 더 적은 금액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의 취득 요건 (양수법인은 양도법인 총자산 공정시장가치의 70% 그리고 순자산 공정시장가치의 90%를 취득해야 함) ·지분 연속성 요건 매수 대사 중 50% 이상이 주식이어야 함. ·Control 요건 (양도법인은 양수법인의 전체 의결권의 50%이상 또는 주식가치의 50%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조직재편 직후 양수법인을 지배해야함)
<b>"F" Reorg</b>	·기존법인의 자산 및 주식은	·신규법인의 주식, 유가증권 및	·기존법인은 청산함	·실현된 이득과 주식 이외의	·당사법인은 단일법인만이 해당함 ·기존법인의 주주는

	신규법인에게 이전	기타자산		수취대가 중 낮은 금액	신규법인에서도 동일한 지분유지
--	--------------	------	--	-----------------	---------------------

표6) 사업조정형 조직재편

구분	매수대상 자산	매수대가	양도법인	주주의 이득	비과세 요건
"G" Reorg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동의를 거쳐 양도법인 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 (가능하다면 부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수법인에 이전	·양수법인의 주식, 유가증권 및 기타자산	·양도법인은 청산되거나 또는 분할되어 남아있을 수 있음.	·실현된 이득과 주식 이외의 수취대가 중 낮은 금액	·양도법인은 수취한 양수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을 그 주주 및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함.

표7) 기업의 재무구조개선형 조직재편

구분	매수대상 자산	매수대가	양도법인	주주의 이득	비과세 요건
"E" Reorg	·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법인의 자본구조가 변경됨	·당사법인의 주식, 유가증권 및 기타자산	·당사법인은 계속 남아있음	·실현된 이득과 주식 이외의 수취대가 중 낮은 금액	·자본재구성 사례로는 주식교환, 채권교환 및 주식과 채권교환이 있음. ·자본재구성 과정에서 현금이나 기타 자산이 배분되어서는 안됨.

## 제5장 기업 인수합병 사례 연구 및 과세 방법

### I. 글로벌(Global)기업 사업구조 재편과 세금문제

#### 1. 공격적 조세회피란?

Tax Avoidance(조세회피)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지칭한다. 과거의 조세회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순납부 거부, 재산명의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의 인터넷 발달과 글로벌(Global)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조세회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법률상의 허점(Loophole) 교묘히 파고들어 조세회피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에 해당한다. 요약하자면 ATP의 특징은 조세회피(Tax Avoidance)만을 목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금융거래 시도한다는 것이다. ATP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1) 조세조약의 남용(tax treaty abuse)

조세조약(Tax Treaty)이란 A국가와 B국가에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가가 투자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즉 A국가와 B국가에 세금을 중복으로 낼 수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쌍방(bilateral) 성격의 조약으로써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상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의 경우 다른 나라 거주자가 한국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수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일랜드(Ireland)와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아일랜드(Ireland)에서 우리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조약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가 아일랜드기업(Ireland)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Ireland)에 아일랜드에서 과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홍콩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한국에서 현대자동차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한국과 홍콩 간에는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한국 소득세법상의 세율 15.4%(국세14%+지방세1.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가 한국에서 원천징수(withholding)된다. 만일 홍콩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아일랜드(Ireland)에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이 현대자동차의 채권을 구입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아일랜드(Ireland)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위 사례처럼 Tax treaty(조세조약)을 활용하여 tax avoidance를 하는 행위를 'tax treaty abuse'라고 하고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고자 본인에게 유리한(favorable) 조세조약을 택하는 것을 'treaty shopping'라고 부른다.

## 2) 무형자산의 이전과 세금 문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은 다른 자산보다 이동이 쉽고 경제적 가치가 높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소득을 해외로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구조재편 및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통해 상표권, 상품로고, 특허권 등 각종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본사로 이전하면서 현지의 다른 기업과 사용계약을 맺고 종전처럼 이리 이용토록 하면서 Royalty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본사에 소득을 쉽게 이전할 수 있다. 그동안 상당수 글로벌(Global) 기업은 국가간 세율 차이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왔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Apple의 경우 1980년 아일랜드(Ireland)에서 설립한 애플 오퍼레이션즈 인터내셔널(AOI),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AOE), 애플 세일즈 인



터내셔널(ASI) 등 3개의 자회사가 Double Irish의 핵심 축이다. AOI는 애플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회사로 애플의 각종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Paper company(페이퍼컴퍼니)이지만 AOE, ASI는 물론 각국에 산재한 애플의 해외 판매법인 대부분을 지배한다. 각 해외법인에서 모인 판매수익은 ASI와 AOE를 거쳐 AOI로 모인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아일랜드(Ireland)의 특이한 세법 덕분이었다. 아일랜드(Ireland)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나라로 유럽연합(EU) 국가 간 자본 이동에 제한이 없고, 결정적으로 자국 내에 주소지가 없는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또 자국 내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Apple의 조세회피기법<sup>51)</sup>은 기업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졌다. 구글과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야후, 어도비 등 쟁쟁한 IT기업들을 비롯해 GE,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스타벅스 등 비IT기업들도 이 기법의 애용자다. <sup>52)</sup>

그러나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BEPS규제안에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과거에 세금을 부과했다 해도 추가로 과세할 필요할 필요가 있으면(가령 Intangible asset이 수익으로 실현되는 시점)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세율 국가에 특허권, 지식재산권, 상표권, loyalty 등 무형자산의 수익 이전함으로써 조세회피 통로로 악용되었다. 또한 글로벌기업은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 future value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과세당국의 검증결과와 차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Intangibles가 글로벌 기업 내부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future value 및 market value를 측정하는 구하는 것 그리고 추정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두고 과세 당국 사후 검증 결과와 기업이 책정한 가치가 클 경우 양측간 치열한 세금 다툼이 불가피하다.

## 2)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주식거래

51) Double Irish Method

52) < 21> 제491호

3)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

4) 엔스왑예금

## 2. 공격적 조세회피방지 방법

### 1) 조세조약의 남용(tax treaty abuse) 방지 방법<sup>53)</sup>

조세조약 남용방지(Action #6)조세조약 체결국들은 tax treaty abuse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의 제목과 서문에 조세조약은 이중비과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또한 미국 등 다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조약혜택제한조항(LoB, Limitation of Benefit)<sup>54)</sup>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주된목적판단조항(PPT, Principal Purpose Test)'을 적절히 활용하여 minimum level of protection을 채택하는 것을 권고한다. 당초 LoB 조항과 PPT 조항 모두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던 입장에서 LoB조항과 PPT조항을 모두 반영하거나, PPT조항만 반영하는 입장, LoB조항과 제한적으로 PPT조항을 반영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flexible하게 선택을 허용하였다. 또한 조세조약혜택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Derivative benefit을 인정했는데, 즉 제3국의 법인을 통해 투자했을지라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직접 타방 체약국에 투자했을 경우와 달리 동일한 수준의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인정한다.<sup>55)</sup>

(Action #15) 상호간(두개의 국가가 체결하는 형태)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다자간(Multinational) 협약개발(많은 나라가 동시에 조약에 합의하는 경우)의 경우 BEPS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조세협약의 재협상을 통한 방식으로는

53) 2014 OECD의 BEPS 이행계획 합의문 Action #6

54) 특정한 객관적 요건을 만족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항

55) 제3국의 법인이 7명미만의 equivalent beneficiary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고, non equivalent beneficiary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총소득의 50%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다자간 협약을 통한 대처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실현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다자간협약은 BEPS로 각 국가로부터 각국의 세법 개정에 대한 확약을 받거나, county by county template(국가별 보고양식) 교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기준의 명확화

(Action #8)은 아직 초안(Draft) 상태로 실무에서 일어나는 issue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전가격지침 Chapter 4,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 property을 대체하는 지침으로 새로운 지침은 다른 조항 및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어 이들이 확정될 경우 향후 보완될 예정이다. 우선 현재 명확화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Intangible asset 및 unique valuable intangibles의 정의를 새롭게 했으면 marketing intangible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무형자산의 소유권에 대해 법적 소유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입각한 경제적 소유권을 가진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했으며 intangibles의 거래시 계약상 권리 혹은 법적 소유권에 대한 귀속권 보다는 실질적인 functional value creation 측면에서 보상범위를 정하고 있다. 법적 소유권자 할지라도 해당 자산의 개발, 유지, 향상, 활용, 보호 과정에서 critical function을 수행하고 자금 조달을 비롯한 자산을 제공하여 관련 risk를 부담해야 개대이익을 받는 다고 명시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무형자산 평가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했는데 Valuation technique 중 Discounted Cash Flow(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할 것을 제한하는 동시에 rule of thumb(경험칙)은 사용하지 못하고 정확한 재무예측자료와 성장률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무형자산 이전가격 산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NE group synergies, location savings and other local market features, assembled workforce(무형

자산에 속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ex-ante returns 와 ex-post returns을 구별하였는데 무형자산의 개발, 유지, 향상, 활용, 보호에 관한 손익은 원칙상 ex-ante returns로 분류되며 예상치 못하게 사후적으로 발생한 손익은 ex-post returns로 관련 risk를 부담하고 관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지침은 현재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intangible asset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시 economic substance에 대해 과세당국에 중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한다.

## 2)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 대응

(Action#1)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과거와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기업인 Apple, Google, Amazon 등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조세 회피전략으로 BEPS 위험, 그리고 각 과세당국과의 과세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Action#1에서는 디지털경제를 정의하고 디지털 경제를 과세하기 위한 별도의 rule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BEPS의 위험에 대응하는 BEPS 프로젝트에 대해 역설한다. 특히 BEPS의 다른 프로젝트인 Action3 CFC rule, Action 7 permanent establishment, Action8,9,10 등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직접세와 간접세 관점에서 디지털 글로벌 기업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화했다.

직접세 측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permanent establishment 적용의 예외규정인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대한 규정을 수정했고 digital presence(디지털 실재)의 위치를 permanent establishment로 간주하도록 했다. 기존 물리적인 permanent establishment을 디지털 경제에 적용하고자 virtual permanent establishment를 기존 permanent establishment로 간주한다. 또한 디지털 재와 및 용역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Banwidth(Bit tax)을 신설했다.

간접세 측면에 대한 방안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간접세 exemption 기준을 수입절차 와 부가가치세 징수처리에 대해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낮췄다. 무엇보다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자에 대해 기존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징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 3) Hybrid Mismatch effect에 대한 대응

Hybrid Mismatch effect란 가령 두 개의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세무 처리상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비용의 두 개 국가에 모두 인정받는 비용의 이중 공제 혹은 한 국가에서는 비용 공제되나 한 국가에서는 과세소득에 불포함되는 경우를 이용하여 조세 회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Hybrid Mismatch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동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적용(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구분	Hybrid Mismatch	불일치 type	주된 규정	보조적 규정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and transfers	금융상품 자체 특성으로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deduction + no inclusion	지급자 국가에서 deduction 부인	수취자 국가 inclusion(소득)
Hybrid entity payments	법인 또는 계약 특성으로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deduction + no inclusion	지급자 국가에서 deduction 부인	수취자 국가 inclusion(소득)
Reverse Hybrids	기업 특성으로 수령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혼성불일치	double deduction	투자자 국가에서 deduction 부인	자회사 국가에서 deduction 부인
Imported Mismatches	혼성불일치 계약상 발생한 지출이 상계처리됨	deduction + no inclusion	투자자 국가에서 소득에 inclusion. 중개국가에서 투자자 통제(CFC rule)	지급자 국가에서 deduction 부인

표 16) Hybrid Mismatch 규제 유형

### 3. 인수합병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 회피

#### 1) 이전가격 정의

Global 기업의 자회사, 지점 등과 모회간의 내부거래, 즉 관련기업(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을 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이를 인수합병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기업(A)이 한국에서 기업을 인수해서 자회사(a)를 설립하면 이 회사는 모회사인 미국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때 영업이익률을 1%을 계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한국 자회사와 같은 업종의 판매 기능을 담당하는 제3의 기업(B)의 영업이익률 7%를 찾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기업 B의 영업이익률 7%와 자회사

a 영업이익률 1%의 차이인 6%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해당기업에 과세를 할 수 있다.

## 2) 인수합병시 TP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Global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이전가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세회피에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재화, 용역의 사고파는 과정에서 Transfer price을 조정하여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수익을 최대한 낮추고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을 이용한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저세율 국가, 대표적인 아일랜드 등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것이다. Google의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는 Google의 전세계 영업망의 핵심이다.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는 유럽 고객들은 광고료를 Google 유럽 본사인 영국에 내는 것이 아니라 구글아일랜드에 지불한다. 이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12.5%로 낮고 구글아일랜드의 수익의 대부분은 사용료, 특허권 등의 명목으로 다른 아일랜드 자회사인 구글아일랜드홀딩에 이전된다. 이를 더블아이리쉬기법이라고 하는데 애플의 더블아이리쉬위드샌드위치틀 사용하여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거친다. 무형자산의 수익 이동 경로는 구글아일랜드(a1), 구글네덜란드(b), 구글아일랜드(a2)로 요약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실효법인세율은 2.4%로 낮춰지게 된다. 만약 구글이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미국 본사에서 해외 제품을 판매 및 용역을 제공한다면 법인세율 35%를 부담해야 한다.

## 3)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전가격 세제 비교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는 1995년에 신설되었는데 다국적기업이 관계기업간의 재화, 용역 거래시에 이전가격을 조작하면서 특히 사업 소득에 대해 자회사 소재지 과세를 피하면서 이윤을 모회사에 이전시키는 등 글로벌 기업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최소화하는 전략을 방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과세관할권이 두 개국 이상 있기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에 대한 협의과정이 수반된다. 국조법 제4조에 국외특수관계자

와의 거래에 대해 arm's length price 해당하지 않는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고 국조법 제5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열거했다. a)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b)재판매가격방법, c)원가자산방법, d)이익분할방법, e)거래순이익률방법, f)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국조법 제7조에는 이전가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을 매개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과세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국조법 제8조에는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가 별개의 국제거래에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상계처리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과세 제외토록 했다. 국조법 제6조에서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를 마련하여 이전가격결정방법, 가격산정 기준 등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사전에 합의토록 했다. 그러나 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조세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장점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조법 제9조에서는 상호합의절차시 외국에서 과세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소득을 감액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조법 제12조에서는 국제거래 관계자료의 제출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조법 제11조, 제12조, 및 국조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납세자에게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두고 불이행에 대해 제재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국제거래의 당사자인 국외 특수관계자가 우리의 과세 영역 밖에 있어 과세 당국의 과세자료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조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있어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실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07년 국세조정법 제6조의 2의 신설규정<sup>56)</sup>을 통해 거주자와 해

56) 관한 법률 제6조의2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외 특수관계기업간의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가능하도록 하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무형자산으로 한정한다고 했으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자산, 서비스, 권리까지 포함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무형자산에 한정해서 원가분담약정을 인정한다.

미국 초기 이전가격세제는 20세기 초반에 도입되는 데, 1차세계대전과 관련이 있다. 전쟁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Income tax를 도입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 Consolidated taxation system을 도입하여 전체소득을 파악하고 임의적으로 배분했다. 이에 납세자는 수익을 미국령 국가 소재 저세율 국가로 이전시키면서 조세회피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한 초기 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를 임의기준과 방법으로 과세했다. 이후 1968년 미국 재무부는 Treasury Regulation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특수관계거래를 유무형자산, 용역거래 등으로 구분해서 유형별 정상거래기준을 열거했다. 결과적으로는 특수관계거래 판단기준으로 정상거래기준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법인으로의 소득분배를 통해 세금을 확보한다는 방향으로 이전가격세제의 기본골격이 갖춰진다. 이전가격세제에서 전통적인 거래방법(CUP method, Resale method, cost plus method)에서 비교가능거래 및 업체를 못찾을 경우 대안적 방법인 BALRM, Basic Arm's length Return Method을 도입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요구되었던 높은 정도의 비교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면서 Price가 아닌 Return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92년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미국 재무부 최종안이 발표되었는데 이익분할방법이 비특수관계자료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 외 정상가격산출방법 또한 비교가능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에 이익분할방법을 이전가격세제에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이전가격세제의 출발점은 다국적기업내에서 관계기업들의 income allocation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 수입국과는 달리 자본 수출국은 income allocation 관점에서 세법을 제정한다. 특히 Basic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m's length Return Method는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개선 및 활용하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기업을 위해 만든 방법이다. 무형자산이 시장에서 실패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intra-firm transaction이 inter-firm transaction보다 수익이 좋다. 기업간에 무형자산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 계약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 그 지식의 가치를 완벽히 반영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은 무형자산 거래 및 거래비용의 합리화를 통해서 독립기업과 달리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전가격세제의 핵심인 특수관계에 대해 미국세법과 우리나라세법에 규정된 것이 차이가 있는데 미 재무부규정 제1,482-1A(a)조에 따르면 controlled 즉 피지배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시행가능한지의 여부, 혹은 집행가능하거나 집행된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직간접 통제를 가리킨다. controlled taxpayer란 some interests에 의해 in/direct 방식으로 소유 혹은 지배되는 두 개 이상의 조직, 사업부문, 사업체를 말한다. 즉 외국법에 의한 조직의 법적형태, 지분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및 상황판단에 따라 control relationship이 충족되는 즉시 특수관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조법 제2조 제8항에 의하면<sup>57)</sup> 세법은 미국보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명시하고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데 훨씬 방어적인 입장이다.

## 2) OECD TP guide line 적용과 최근 시사점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는 arm's length pricing method(정상 가격

57)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제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제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원칙)을 제시하면서 자율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는 제3자 간 거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TP를 이용한 무형자산 거래의 조세회피에 이를 악용하면서 대안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즉 Global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OECD에서는 Formula apportionment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시장가격 보다는 실물 위주,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 규모 등으로 공식을 만들어 활용해서 이익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먼저 자원 개발 산업에 이 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하자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글로벌 기업 전체 이익을 결정하여 과세대상 개별 entity에게 글로벌 이익을 비용, 자산, 급여 등을 수식화해서 할당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우선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국제 조정에 관한 합의를 요구하며, 해당 주식에 대해 일반적인 회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국가 별로 predominate 활동기준이 상이할 경우 주식 가중치 부여시 논란이 발생하기 쉽다. 물론 해당 주식을 자의적으로 조작해서 조세회피에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환율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하는데 특정 강세 통화 국가는 수출 및 수익에 영향을 미쳐 수식화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 II. 최근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과세 사례 연구

### 1. 구글세 공론화

유럽연합(EU)에서 촉발된 Google tax 징수는 국내에서도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국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sup>58)</sup>(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업을 대상으로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발달에 따른 ‘국경 없는 소비 시대’를 반영하도록 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Google Tax 논쟁은 글로벌 IT 기업의 현지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권 여부를 담고 있다. 즉,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server)나 지사(subsidiary)를 두는 방식으로 하는 조세회피 방법에 대응하자는

58)

최근에는 웨어러블, 빅데이터가 각광받고 있다.

것이다. 조세회피 관점에서 국내 IT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상 우리나라에 서버(Server)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만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글이 국내 앱마켓(app store)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Market share 기준으로 추정할 때 연간 1조 59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server<sup>59)</sup>가 국외인 아일랜드(Ireland)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직접세인 법인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 app market에서 판매되는 앱, 음악음원, 영화다운로드 파일 같은 전자적 용역에 대해 VAT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접세인 법인세 부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화나 TV프로그램 저작권 copyright(저작권), patent right(특허권), utility model right(실용신안권), trademark(상표권), design right(디자인권)등에 대해서는 국외에 세 등록해왔다 해도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domestic income)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컴퓨터 program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판매소득을 올려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국내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가간 협의를 통한 조세조약 등의 개정을 통해 현재 ‘서버 소재지’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up>60)</sup>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 국가 간 외교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OECD에서 PE(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방법을 논의 중으로 향후 결과를 토대로 국내법에 반영해서 과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인수합병 관련 장부상 영업권 과세 문제

### 1) 관련 개념 정리

59) (영어: server)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server computer) 또는 프로그램(server program)을 말한다

60) permanent establishment (PE) is a fixed place of business which generally gives rise to income or value-added tax liability in a particular jurisdiction. The term is defined in many income tax treaties and in most European Union Value Added Tax systems.

합병차익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국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익금불산입한다.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금액 혹은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므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익금불산입이다. 합병차손은 합병차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차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합병평가차익은 승계한 자산의 시가 평가액이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병등기일 시점에 익금산입하고 추후 승계자산의 감가상각비에서 손금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증가액을 공제한 것을 의미하는 합병차익과는 구별된다.

회계상 영업권은 합병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매수원가를 초과한 부분을 말한다. 세무상 영업권은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사를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피합병법인 혹은 분할법인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사업상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한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다.

## 2)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과 기업 입장

2013년부터 국세청은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과세<sup>61)</sup>를 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입장은 장부상 영업권이 세무상 감가상각 자산이 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피합병법인의 거래관계 또는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인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정되고 영업권에는 1)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과 관련해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61) 778억원, 오성엘에스티 56억원, 에스비엠 45억구엔, SM C&C 36억원, 예당컴퍼니 28억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적절하게 평가한 금액, 2) 설립 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해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금액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상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일반적으로 시가,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지 않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를 종합하면 세무상 영업권이 인정되려면 합병 당시에 법인이 영업권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sup>62)</sup>를 받거나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했어야 하나, 합병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 산정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회계처리준칙에 따른 합병대가에서 순자산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인식한 것이다. 국세청은 회계상 영업권이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된 후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지지 않고 단순히 회계상 영업권을 세무상 영업권으로 판단하고 과세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입장은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했고 그에 기초한 합병대와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세무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형자산의 승계 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도 시가평가 합병의 경우에는 승계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기업 측에서 주장하는 영업권을 단독 평가해하만 세법상 영업권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사업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 및 평가해도 기업의 거래 관행이나 회계준칙 상 부당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 합병을 통해 피합병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더라도 세무상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세무상 영업권의 평가는 단독

62) 영업권이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된 후 평가 및 승계된 것인지 엄격히 따져서 합병평가차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전체가치인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회계상 영업권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과세 관청 입장에서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회계상 영업권을 먼저 과세하고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서 손금산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과세 측면에서는 회계상 영업권을 과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종전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회계상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영업권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기업이 2010년 7월 이전 영업권에 대해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을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회계상 영업권을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영업권 과세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연관된 5년치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금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M&A 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된 측면도 있다. 2010년 7월 이후 영업권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되므로 합병영업권 자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07.01. 이전 이후로 합병에 대한 과세 체계가 달라지는데 1) 2010.07.01.이전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구 법인세법 17조①항의 3.에 따라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익금불산입하고,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한다. 적격합병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가능하다. 합병이후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가능하므로 전체적인 과세는 동일하다.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까지 법인세 신고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다.<sup>63)</sup> 2) 2010.07.01. 이후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즉 양도가액에서 피합병법인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없게 된다. 우선 합병을 먼저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으로 구분하는데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피

63) 건물 장부가액 200만원(시가 250만원), 부채 100만원, 매수대가 200만원인 경우 합병법인 분개 및 세무조정

(차) 건물 250만원, 영업권 50만원 (대) 부채 100만원 자본금 200만원  
(익금산입) 합병평가차익 100 기타 (손금산입) 건물일시기장충당금 50 △유보

2013.3월에는 국세청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과세를 하였다.(심사법인 2013-0026, 2013.07.16..)

합병법인은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고<sup>64)</sup> 합병법인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한다. <sup>65)</sup> 따라서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시점에 추가적인 세부담은 전혀 없다. 비적격합병시에는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은 양도손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한다. 즉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이 세부담, 과거 미실현손익의 실현을 의미하는데 추후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등을 통해 공제받게 된다.<sup>66)</sup>

## 제6장 결론

### I. 기대효과

#### 1. 해외 인수합병과 조세전략 수립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시 세무상 혜택

64) 법인세 신고시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65)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통해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사후관리토록 한다.

66) ①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은 세무조정없고 합병법인 분개 및 세무조정은

(차) 건물 250만원, 영업권 50만원 (대) 부채 100만원 자본금 200만원

(익금산입) 합병평가차익 100 기타 (손금산입) 건물일시기장충당금 50 △유보 영업권 50 △유보

②비적격합병인 경우 피합병법인은 100만원을 익금산입하고 합병법인의 경우 건물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게 되면 영업권의 경우 5년간 손금에 균등하게 산입된다.



## 연구

법인의 형태, 이중과세 방지협약 맺은 여부, 각국의 세제 차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법인에 대한 과세 누락 발생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 모기업은 외국에서 원천징수 납부액 최소화 및 재투자에 의한 과세이연효과(Tax deferred effect)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지주회사(EU소재)는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어 원천징수에 의한 tax leakage 없게 된다.

해외 인수합병과 조세전략 수립시 한국기업들은 해외투자시 세무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지주회사 설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세 방법과 탈세 방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 수립할 수 있다.

### 2. 글로벌(Global) 기업이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기 활용

Transfer pricing guideline에서는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란 글로벌(Global) 기업이 기능, 자산 또는 위험을 다른 국가에 재배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economies of scale)와 Synergy 극대화, 사업부문 경영의 합리화, 글로벌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sup>67)</sup>의 감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한다.

구조조정(restructuring) 이전 수행활동,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Function, Asset, Risk)을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통해 국외 특수관계자(Affiliated official)(Affiliated Persons)<sup>68)</sup>에게 재배치 할 경우 이전

67) The effective tax rate is the average rate at which an individual or corporation is taxed. The effective tax rate for individuals is the average rate at which their earned income is taxed, and the effective tax rate for a corporation is the average rate at which its pre-tax profits are taxed.

68) Affiliated Persons are individuals, corporations, trusts, etc. who are in a position to influence a corporation's decisions. It includes officers, directors, and principal stockholders (those with 10% ownership or more) of the corporation, and their immediate families. They are also called insiders or control persons.

가격세제 대상인지 정상거래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 또한 구조조정(restructuring)과 관련한 FAR 거래를 국제거래 중 무형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손익 또는 자산과 관련한 거래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사례연구와 합리적인 과세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글로벌(Global)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시 FAR 거래에 대한 과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글로벌(Global) 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시 발생할 조세 문제와 관련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우리나라 국조법을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하다.

## II. 인수합병 활성화관련 정책제언

### 1. 인수합병시 과세 특례대상 범위에 대한 확대 필요

합병 및 분할에 대해 과세특례(Special Tax Incentives\_ 규정<sup>69)</sup>을 두는 취지가 기업결합을 활발하게 유도하는 것이기에, 과세특례 대상을 M&A와 경제적 실질이 비슷한 Stock exchange(주식교환)을 통한 Acquisition(인수) 및, 자산인수(property take over) 및 등에 대해서도 확대하였다.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M&A와 경제적 실질이 비슷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대해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sup>70)</sup>를 신설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기업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지원하고자 과세특례 적용요건 중 양도대가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95%이상에서 80%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과세특례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른 적용 요건<sup>71)</sup>에 대해서도 완화하

69) 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제46조의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르면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70)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피인수 및법인이 포괄적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산하는 규정의 경우 통상 단기라는 개념을 1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함으로써 과세특례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46조 【기업 간 주식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72)의 한시적 규정에 의거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sup>73)</sup>할 때까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소득세법에서 회사법상 M&A 뿐만 아니라 7가지 타입의 조직재편 유형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적용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직재편 중 합병(법인세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제46조의5, 제46조, 제47조), 현물출자(법인세법 제47조의2)에 한정해 특례규정이 있다.

## 2. 과세 특례 요건과 관련한 규정의 정비 방법 마련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형식적이다. 피인수 및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인수 및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인수 및대가와의 차액(인수 및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승계 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는 사후관리 조치를 두고 있다.

71) 양도, 자산의 대부분(자산총액의 70%이상이고 순자산의 90%이상)을 양도, 피인수 및법인은 포괄적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

72) 제37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73)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처분도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 M&A 당시 개별 상황의 사실 및 정황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판단이 개입되고 있어 형식적 요건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세법의 과세 특례 대상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특히 형식적 요건 3년이라는 규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있으며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M&A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

### 3. 현행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M&A이후 합병법인(A)이나 신설법인(C)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소득이 피합병법인(B)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deduction of loss forward)해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sup>74)</sup>에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사업구조재편을 이월결손금 공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에 조직재편의 사업목적,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등이 요건이 있기에 미국의 경우처럼 비과세 조직재편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 III. 인수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와 관련한 정책제언

---

74) 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및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김진수, 『주요국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세제와 시사점』, 한국조세  
연구원, 2010.10.29.

남기봉,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 조세회피방지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김진수, 『주요국의 합병 및 분할세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12.29.

안중석,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 및 대응방법』, 한국  
조세연구원, 2006.3.

김철중, 『우리나라 인수합병 현황 및 활성화 방법: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2013.06.

임동원,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2

이미영, 『법인세법상 결손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실비대  
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사업구조재편과 이전가격(PWC)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해결(안진회계법인)

홍성대·김정우·허형,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삼일인포마인, 2015

Scholes·Wolfson·Erickson·Hanlon·Maydew·Shevli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2016

2015년 기업결합 동향, 공정거래위원회, 2016.02.29.